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

1 장
개요



이박사



국가



제공국



이용국

1 배경

- ▶ 1993년 12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발효
 -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인정
 -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국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취득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 ▶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COP6)에서는 협약 제15조에 규정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 ABS)와 관련하여 구체적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내법이나 행정적 조치, 계약체결 등에 참고가 될 본 지침(Bonn Guidelines)을 채택
 - 본 지침 :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 그러나, 본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지침에 불과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실효적인 이행이 의문시된다는 우려가 제기
 -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ABS에 대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협상하도록 결정
 -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COP7)의 결정에 따라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를 시작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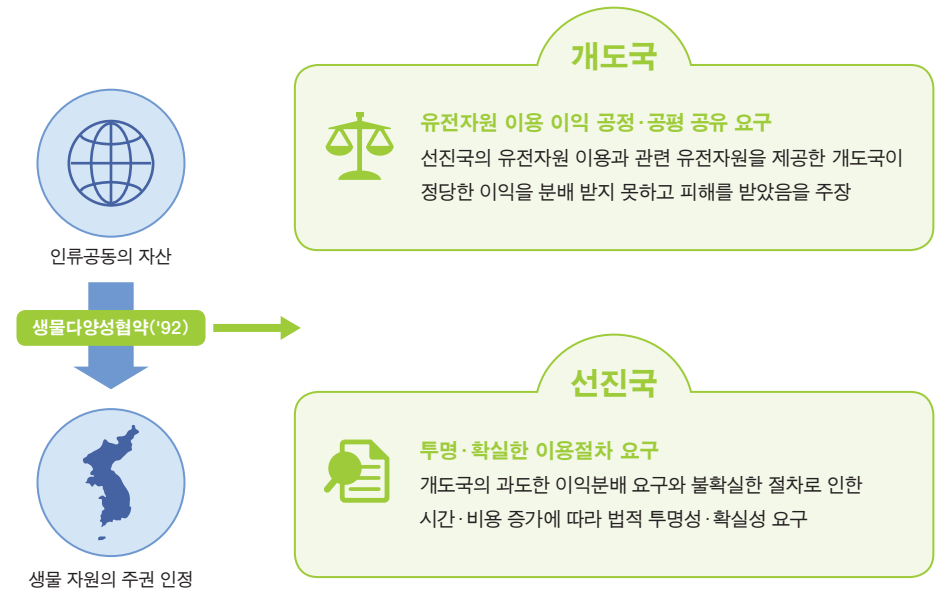
발효 및 가입현황

- 채택 및 발효 : '92.5.22 채택, '93.12.29 발효
-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 : '94.10.3 가입, '95.1.1 발효
- '13년 현재 가입국 : 193개국(EU 포함)

협약의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약칭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
 -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마련 중
 - 이에 유전자원 관련 바이오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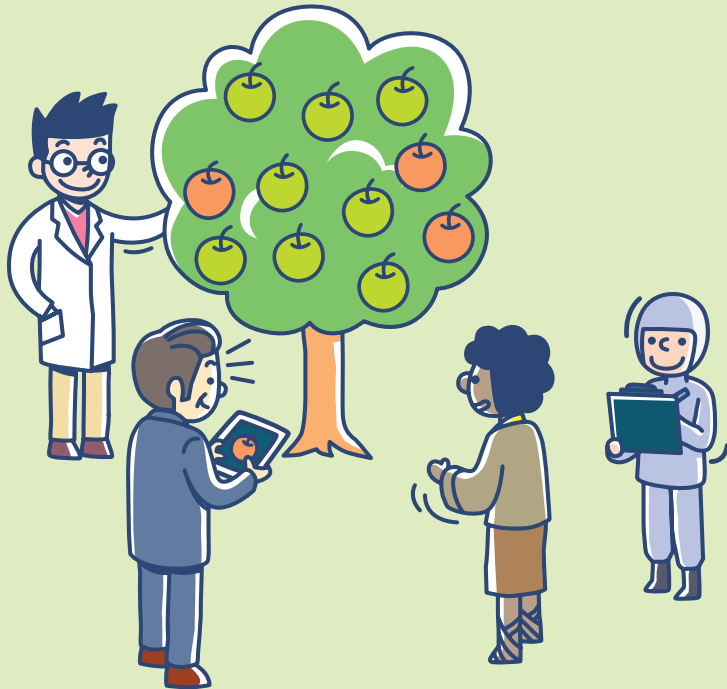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의 목적

- ▶ 유전자원에 상업적 접근을 위한 기업과 비상업적 접근을 위한 연구소와 대학, 연구자 등은 생물 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인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원칙을 이해하는 동시에 유전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유전자원의 제공자측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 장기적으로 유전자원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자와 이용자 쌍방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자원제공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용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제공자와 이용자 쌍방의 이익이 상생의 관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고려
 - 이용자가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려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본 지침의 주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이해토록하여 불필요한 손해 예방



2장
주요내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을 알아봅시다.

1 적용범위

- ▶ 본 안내서는 나고야 의정서 범위(의정서 제3조)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상으로 함
 - 단, 인간의 유전자원은 제외
 -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 등의 이용을 국내법 또는 행정조치로 제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행정조치가 적용되므로 접근하고자 하는 각 개별국의 상황을 반드시 확인
-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에서의 대상은 제외
- ▶ 우리나라 내 유전자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해서는 국내의 관계 법령에 따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축산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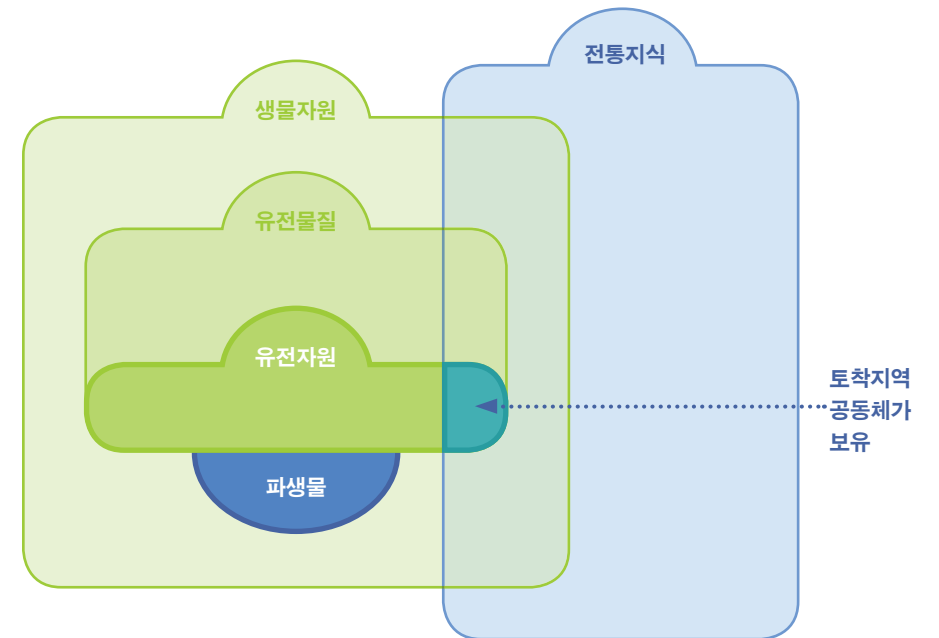
2 기본 고려 사항

제공국의 국내법 적용

-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음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원칙은 제공국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등에 의해 정하여짐
- ▶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생물다양성협약을 담당하는 각 국가의 국가연락 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을 통한 관련 조치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
 - 현지의 법률 사무소 등을 이용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조사하도록 한 다음 유전자원에 접근

계약의 적용

-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는 이에 관계되는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등에 따라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따름
- ▶ 계약 교섭 시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 의정서의 규정, 본 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3 용어설명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서 정의된 용어

-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CBD 제2조)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는 유전물질(CBD 제2조)
-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나고야 의정서 제2조)
-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 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CBD 제2조; 나고야 의정서 제2조)
- **파생물(Derivative)**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나고야 의정서 제2조)
-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CBD 제2조)
- **현지 내 상태(in-situ condition)** :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 사육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CBD 제2조)
- **생태계(Ecosystem)** :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락과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비생물적인 환경의 역동적인 복합체(CBD 제2조)
- **서식지(Habitat)** :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장소 또는 그 유형(CBD 제2조)
- **사육 또는 배양종(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CBD 제2조)
-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의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CBD 제2조)
- **현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자연 서식지외에서 보전하는 것(CBD 제2조)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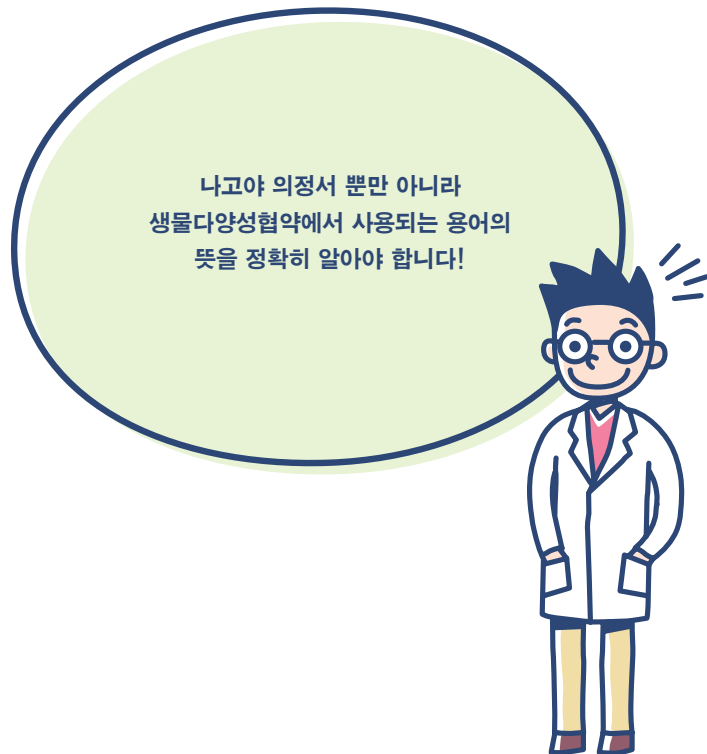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전통지식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생물다양성협약 제 8조(j)항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CBD 제8조(현지내보전)

(j)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취하여온 원주민 사회 및 현지사회(‘토착지역공동체’라고도 함,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ILCs)의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도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름
- **이익(Benefit)**
 -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나고야 의정서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4항, 부속서).
-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PIC)**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 등”)의 이용자는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는 경우, 지원 제공국의 국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CBD 제15조 제5항;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 또한,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 등의 소유자 및 토착지역공동체의 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2항, 제7조)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 MAT)**
 -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공유는 해당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짐.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자원제공국의 법령 등이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CBD 제15조 제4항, 제7항;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
 - CBD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설치(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제1항)
 -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 특히, 이 체계는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제1항)

-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공개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제2항)
 -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상응 문서
-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제3항).
 - 토착지역공동체(ILC)의 관련 책임기관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 표준계약조항
 -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 및 수단
 - 행동규범 및 모범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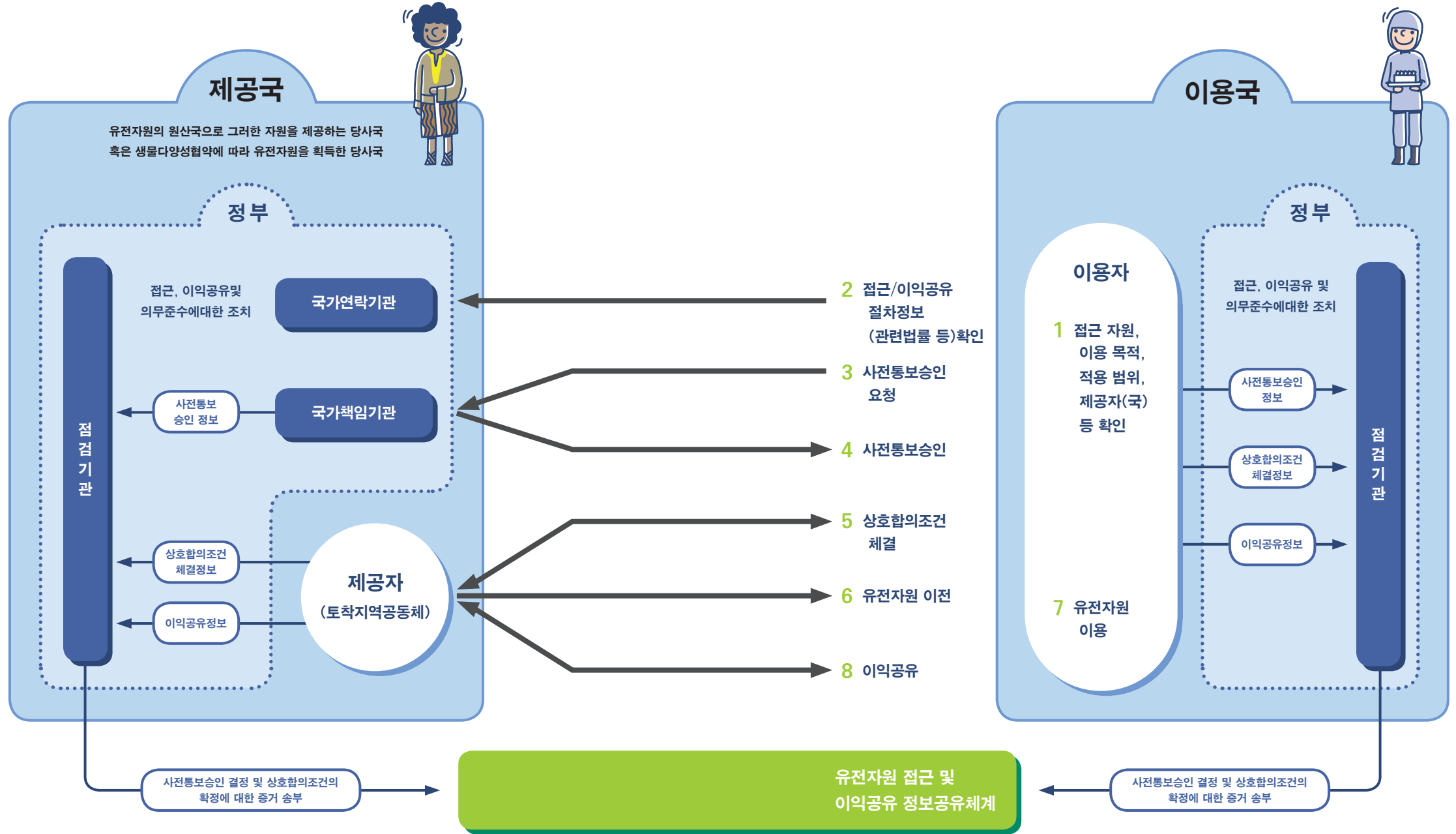
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 단계별 고려사항

구분	점검사항	
접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한 이익공유를 포함한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절차에 관한 정보	
	이익공유를 포함하여,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한 가능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허가절차, 이익공유를 포함한 적절한 상호합의조건 체결 절차에 관한 정보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	
사전 통보 승인 (PIC) 취득	교섭 과정에 대한 정보	
	사전통보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상호합의조건 설정 요건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공유 감시(monitoring) 및 평가 방법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공유 실시	
	신청 처리 및 승인	
	접근되는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이해 관계자가 효과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체계(특히, 토착지역공동체 참여)	
관계된 토착지역공동체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행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토착지역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상호 합의조건 (MAT) 설정	사전조사	
	거래에 관한 법제나 상관습 등 조사	
	물질이전계약 (MTA)	이전 시키는 유전자원의 종류, 양, 이전 시기 등
		이전 시키는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연구 목적인지 상업 목적인지를 포함시키며,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교섭 시 유의사항	해당 소재의 제3자에게 이전 및 그 수속
	이유국	이익공유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것
제공국	기여도에 따른 이익공유	
준수	이용국	제공국의 국내법 준수 여부, 사전통보승인 취득 여부, 상호합의조건 설정 여부 등 감시 조치
	제공국	국내법 및 행정조치의 책정 등 접근 수속의 투명화 의무 제공국 측의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
분쟁 해결	재판관할 결정	분쟁이 일어났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할지 여부
	준거법 결정	계약상의 문언의 해석이나 그 유효성에 대해서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할지 여부

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도

적용범위 :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



2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특징

1) 관련 규정

- CBD 제15조 제1항
- 나고야 의정서 제13조 제1항, 제2항
- 본 지침 단락 13, 14

2) 개념

- ▶ 유전자원 등의 접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권한은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 정부에 있어, 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할 때에는 우선 그 국가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등의 조사 필요
- ▶ 각 국가의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과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을 통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
- ▶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대한 정보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웹 사이트 “Lists of National Focal Points”(http://www.cbd.int/information/nfp.shtml)를 참조
 - 해당 국가의 국내법 등의 내용은 CBD 사무국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국가연락기관 혹은 국가책임기관과는 다른 부서가 담당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가)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국가연락기관을 통해 다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나고야 의정서 제13조제1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이익공유를 포함)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익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정보
 - 국가책임기관,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나)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 국가책임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나고야 의정서 제13조제2항)
 -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부담

- 본 지침(단락 14)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설명(본 지침은 자발적인 지침임)
 - 국가책임기관이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하는 국내법의 법률, 행정 및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의 승인에 책임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관해 조언하는 책임을 가질 수 있음
 - 협상 프로세스
 - 사전통보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상호통보승인에 이르는 요건
 - 접근과 이익공유 계약의 모니터링 및 평가
 - 접근과 이익공유 계약의 이행 및 시행
 - 신청 처리 및 계약의 승인
 - 접근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접근과 이익공유 프로세스에 적절한 다양한 단계에 대한 개별 이해당사자, 특히 토착·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메커니즘
 - 결정방법과 절차가 관계된 토착·지역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행하려는 목적을 추진하는 한편, 토착·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메커니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비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원의 접근, 이익공유, 사전통보승인, 상호 합의조건 등 ABS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이러한 정보는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공유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국가의 법률, 행정, 정책적 조치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해주는 책임기관으로, 접근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서면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기타 PIC, MAT요건,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상 프로세스 등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음.

3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PIC)의 취득

1) 관련 규정

- CBD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 본 지침 단락 26, 27, 28, 33, 34, 36, 38, 39, 40

2) 개념

- ▶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PIC)을 얻어야 함

가) 사전통보승인의 취득

- 유전자원 등에 접근할 경우, 제공국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등에 따라 허가 취득 등의 수속이 필요함
- 몇몇 국가는 제공국 국내법이나 행정조치에 의해 토착지역공동체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나) 유의점

- 유전자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해당 국가의 사전통보승인의 필요성이나 수속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유의해야 하는 조사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1) 사전통보승인의 발행 주체

- 각국 정부의 어느 수준에서 승인을 얻는가?(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등)
- 유전자원 등과 연관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이 필요한가?
-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습법, 공동체 규약이 존재하는가?

(2) 사전통보승인의 취득 수속

- 신청서 양식 및 필요한 기재 항목 등에는 무엇이 있는가?(목적, 기간, 유전자원 등)
- 사전통보승인은 특정한 이용에 대해서만 받는가?
- 제3자에의 양도를 포함하는 이용 변경은 별도의 사전통보승인의 신청을 필요로 하는가?
- 사전통보승인은 문서화된 것인가?
- 사전통보승인은 신청일로부터 몇 일 이내로 허가되는가?

3) 각 국가의 법

- ▶ 각국의 국내법의 실시에 대한 정보는 CBD 사무국 웹 사이트 “ABS Measures Search Page”(http://www.cbd.int/abs/measures/)를 참조

4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 MAT)의 체결

1) 관련 규정

- CBD 제1조, 제15조 제2항, 제4항, 제7항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본 지침 단락 41, 42, 43, 45, 49

2) 개념

-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해서는 통상의 거래와 같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합의 조건 하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임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4항·제7항 및 나고야 의정서 제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호합의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 지침의 단락44(전형적인 상호합의조건의 예시 목록)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상대방과 상호합의조건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할 때에는 유전자원 접근 관련 상대국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며, 거래에 관한 법제나 상관습 등에 대한 부분도 유의하여야 함
 - 특히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
 -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3항 제g호에 의하여 상호합의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칙 및 수속을 정하는 제공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 유전자원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합의 후,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s : MTA)」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음
 - 물질이전계약은 상호합의조건의 일종으로 물질이전을 동반하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정하는 계약임
 - * 이전 시키는 소재의 종류·양, 이전 시기, 이전 시키는 소재의 이용 목적, 해당 소재의 제3자 이전 및 그 수속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국가에 따라 물질이전계약의 내용에 대해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국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 물질이전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의하는지는 본 지침 부속서에 물질이전계약 권장 요소가 기재되어 있음

가) 이익공유(Benefit-Sharing)

-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의 교섭에 의해 공정하고도 공평한 이익공유를 해야 함
- 이용자 측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제공자 측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대화하여 쌍방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섭하는 것이 중요함

(1) 이익의 의미

-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이익”이란, 유전자원의 이용에 의해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함

(2) 이익공유 방법

-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으로 구별됨
- 나고야 의정서 부속서에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의 예를 제시하고 있음
 - 금전적 이익의 예로는 취득한 유전자원 관련 선불, 로열티, 장비의 공급 등이 있을 수 있음
 - 비금전적 이익의 예로는 공동연구에서 유전자원 제공자 측 스태프의 교육 훈련이나 기술 이전,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 등이 있을 수 있음

나) 유의점

(1) 각 국가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등에서의 취급

- 계약 상대국에서 거래에 관한 법제나 상관습 외에 특정한 국내법이나 행정조치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공유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함

(2) 교섭에서의 유의점

(가) 이익공유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교섭에 있어서 공유되어야 하는 이익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면,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려고 하는 경우 제품의 매장에서 연구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이용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제공자의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음
- 또한, 교섭시 유전자원 등을 이용한 연구개발이나 제품화로부터 실제 이익이 얻어지는 과정은 기간이 길다는 것을 계약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게다가 산업 분야(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여도에 따른 이익공유

- 공정하고도 공평한 이익공유란 균등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제품 개발이나 발명 등에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서 당사자 간 배분율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

3) 각 국가의 법

- ▶ 각국의 국내법의 실시에 대한 정보는 CBD 사무국 웹 사이트 “ABS Measures Search Page”(http://www.cbd.int/abs/measures/)를 참조

상업적 목적의 이용 시 이익공유 방식 (모델)	
<p>일본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가 인도네시아와 연구협약(2003~2006년)을 체결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해각서에 따르면, 생물유전자원의 이전, 제3자에의 분양에 대해서는 물질이전협정(MTA)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양자공유이고 이익공유는 기여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내용적으로 볼 때 비금전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p>스위스 Novartis와 태국 BIOTEC이 1단계 협력계약(2002~2005년), 2단계 협력계약(2008~2011년)을 체결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TEC은 Novartis와 미생물과 자연화합물의 소유권을 공유함 - BIOTEC은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비율로 판매에 대한 지불 또는 이용료를 받는 Novartis 연구부서의 제약 개발 기술 분야 관련 3개월 단위의 총 6번의 인턴십을 태국과학자들에게 제공함 - Novartis과학자들은 BIOTEC의 자연물질과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과 영업에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등 BIOTEC에 조언을 제공함
<p>케냐 Kenya Wildlife Service가 Novozymes사와 협력계약(2007~2011년)을 체결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vozymes사가 Kenya Wildlife Service에게 Pulpzyme의 누적매출액 대비 로열티 지급과 향후 발생하게 될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포함한 보상을 제공 - Novozymes사는 KWS에게 선급기술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샘플의 수집 및 연구조사활동 비용으로 사용됨 - Novozymes사가 KWS의 연구조사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일스톤비(개발단계에 따른 추가 기술료)를 지급함 - 비금전적 이익공유는 기술이전 및 역량구축을 포함하게 되는데, 미생물 발견을 위한 실험실의 구축, 미생물의 분리, 분석에 관한 기술, 효소검출과 관련된 재료의 공급, KWS 직원들의 Novozymes사 방문교육을 제공함 - 지식재산권적 측면에서 보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Novozymes사와 KWS가 공동으로 소유함

5 의무준수(Compliance)

1)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본 지침 단락 16

2) 개념

- ▶ 나고야 의정서에서의 '준수'는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와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 준수」에서 규정하고 있음
- ▶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monitoring)」의 규정이 있음
- ▶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함
 -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한 경우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
 -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특정 지정 점검기관의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위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각 당사국은 미준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관련 국가 기관들, 사전통보승인을 하는 당사국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해야 함
 - 점검기관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직무는 유전자원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모든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함
- ▶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의 쌍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단, 그 의무의 이행에 관해서는 각 국가에 상당한 재량을 맡길 수 있음

가) 이용국의 조치

- 해당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국내법 등을 준수하고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서 취득되고, 나아가 상호합의조건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국(모든 당사국)에서는 감시(monitoring)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제공국의 조치

-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제공국 측에 국내법 혹은 행정조치로서, 접근 수속을 투명화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6 분쟁해결

1)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3항(g), 제18조
- 본 지침 단락 59

2) 개념

- ▶ 문화, 환경이 다른 국가의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나 사업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양호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언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름
- ▶ 따라서 분쟁발생을 다루는 위험 관리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함
- ▶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와 잘 협상하도록 하여 계약서 중에 세세하게 정해 놓는 것이 위험 경감으로 이어짐

가) 재판 관할 결정

- 분쟁이 일어났던 경우에,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함

나) 준거법의 결정

- 계약상의 문언의 해석이나 그 유효성에 대해서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지를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함
- 분쟁해결에는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있으며,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음
 - 당사자 간의 해결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면, 시간이나 비용의 부담이 최소가 되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알선, 조정, 중재 :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대화에 의해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3자를 가운데 넣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소송 : 소송에 의해 분쟁해결을 도모하기도 함.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 재판 관할 및 준거법을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함

7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1) 관련 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4조

2)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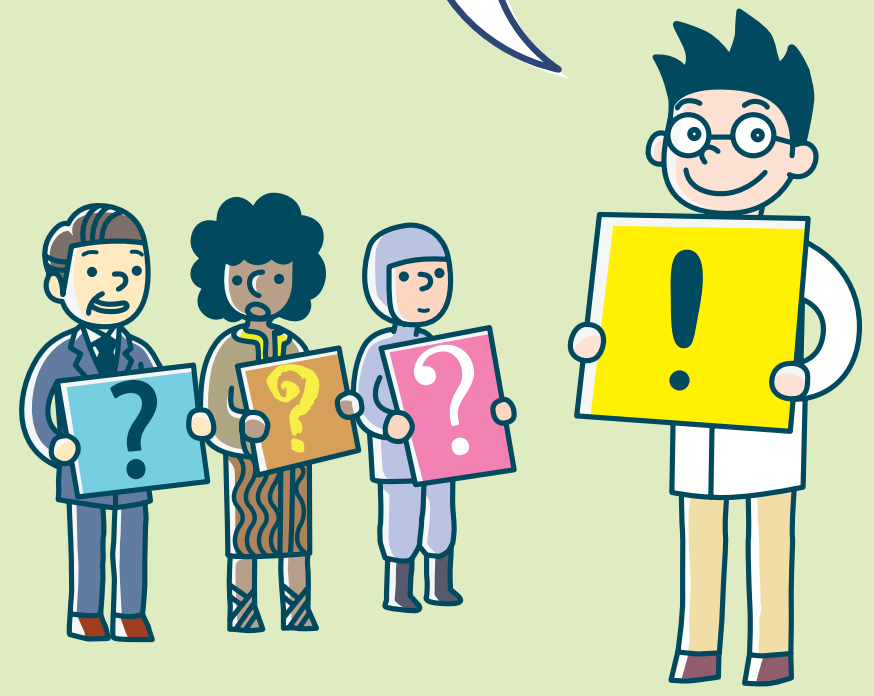
- ▶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 제3항에 기초하는 정보교환 구조의 일부로서,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가 설치 될 것임
 - 이 체계는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함
 - 특히 제공된 나고야 의정서의 실시와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제1항)
- ▶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함(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제2항)
 - ABS에 관한 입법상, 행정상 및 정책상의 조치
 - 각 국가의 국가연락기관이나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 사전통보승인을 부여하는 결정의 증거나 상호합의조건을 설정한 것의 증거로서 유전자원 등에의 접근 시점에 교부되는 허가증 또는 이에 상당한 것
- ▶ 추가적인 정보에는 다음을 포함시킬 수 있음(나고야 의정서 제14조 제3항)
 - 토착지역공동체가 관련되는 국가책임기관, 이에 관계된 정보
 - 표준 계약 조항
 - 유전자원을 감시(monitoring)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 및 틀
 - 행동 규범 및 모범 사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궁금하시면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ABS 정보서비스센터로 문의바랍니다.

ABS 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 www.abs.go.kr
전화: 032-590-7161



3 장
Q&A



궁금한 것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에 물어보세요.

1 적용범위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한약재를 수입하여 전탕하여 환자에게 줄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논점

- 원재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기초하여 그 추출물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 여부
- 원재료의 추출물을 단순히 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적용 여부

해설

- 전탕은 원재료의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인 경우가 많음
- 나고야 의정서 제2조(c)항에서는 ‘유전자원 이용’을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
- 따라서, 원재료의 추출물들의 성분 및 효능, 혼합 비율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을 통하여 전탕을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해당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연구 및 개발 단계가 없이 단순 식용 목적으로 한약재를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식용 목적의 가공식품의 제조에 한약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단,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 없이 한약재나 유용 식물을 단순히 식용으로 또는 한약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첫째, 관련 전통지식이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접근될 것, 둘째, 관련 전통지식이 토착 지역민(ILC)이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함.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수 백년 전에 이미 일반 대중이나 이웃 국가에 널리 전파된 관련 전통지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야 함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주장하는 국가는 국내법률(요건 아님)을 통해 토착지역민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고, 토착지역민의 효과적인 참여하에 그 요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ABS Clearing House에 공개하여야 함
- 각 당사국은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의정서 보다 강력한 보호규정을 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국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2조(c)항, 제3조, 제5조 제5항, 제7항, 제12조, 제13조(1)(b) 항 등



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파생물(예 : 조개껍질)을 연구·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등에도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논점

- 파생물의 적용 여부

해설

- 이익공유의 대상은 유전자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가 의정서 범위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
 - 나고야 의정서 제2조(e)항에서는 ‘파생물’을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고 정의
 - 또한, 나고야 의정서 제2조(c)항의 정의상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즉, 반드시 유전적 성분에 대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것도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 파생물의 경우에도 그것이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성분” 인 한,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
- 또한, 연구·개발의 수단에는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한다”는 규정도 주목해야 함
 -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이란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해 생물계, 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함
 -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이나 파생물을 분석 또는 연구하여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유전자원의 이용 개념에 ‘파생물에 대한 이용’이 문안상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생물’이라는 개념은 생명공학기술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유전자원의 이용’의 개념에는 ‘파생물에 대한 이용’이 우회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
- 다만, 의정서의 문안 협상 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의 정의에 ‘파생물’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채택되지 못했으므로, 유전자원이 없는 파생물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제정되는 각국의 법령 및 조치의 동향을 살펴, 각국이 파생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과 이익공유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나고야 의정서 제2조 (c) (d) (e), 제3조

“파생물”은 유전자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생물에서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논점

-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 여부

해설

-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보승인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익공유 체제를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
 - 이는 의정서 당사국들은 사전통보승인 제도는 재량껏 마련할 수 있으나, 이익공유 체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을 의미
 - 따라서 자국의 자생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국법에 따라 이익공유를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서 비준을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국내의 자생식물을 이용하고 우리 법령에서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가 자국 국민에게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동 유전자원이나 정보를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6조



연구 및 개발의 원료로 쓰이는 생물자원이 국내에 자생하고 있으나, 생산비용 절감이나 대량 상업화 필요로 해외에서 재배·수입하여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논점

-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생물자원(일명 고유종)을 해외로 반출하여 재배 후 수입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의정서 적용 여부
- 국내 및 해외에 모두 서식하고 있는 동일한 생물자원의 경우 국내의 생물자원을 해외로 반출하여 재배 후 수입하여 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의정서 적용 여부

해설

- 의정서 제5조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 사육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정의
 -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을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현지의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정의
- 따라서,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종을 해외(예: A국)로 반출하여 양육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 A국은 ‘유전자원 제공국’이기는 하나, A국에서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 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한, 해당 A국가가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해외 국가와 이익 공유를 할 필요는 없음
 - 단,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 국가일 것이므로 우리 국내법에 따라 국내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가 결정되게 됨
- 만일 해당 종이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예: B국)에서도 자생하는 종일 경우에는
 -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우리 자생종을 외국에 가져다가 재배해서 들여오는 것이라도 결국은 해당 외국의 자생종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즉,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예, 우리나라와 B국)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예 B국)],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음(예, 중국 또는 인도)

- 주의할 점은 나고야 의정서 제5조에서는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과 이익공유를 하는 것은 물론,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이익 공유를 할 것도 요구하고 있음
 - 이때,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사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향후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음
 - 앞으로 이 문구의 해석이 국제적으로 진전되게 되는 경우,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이외에도 선택적 또는 추가적으로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 상대국가가 등장할 수 있음
- 참고로 의정서 제11조에서는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현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예를 들어, 동일한 유전자원이 한국, 중국, 일본의 영토 내 자연서식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삼국이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앞으로 이러한 협력체제의 진전여부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이익공유 상대국과 공유방식의 적용에도 미리 대비해둘 필요가 있음
- 해당 국가의 ABS법률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배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상호합의조건(MAT)에 합의할 필요 있음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3항, 제7항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1조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식물을 재배하여
국내로 반입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논점

- 국내 생물자원을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재배 후 반입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설

- 이익 공유는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인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해야하는 것이 원칙
 -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재배 여부는 의정서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음
-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생물 종을 해외로 반출하여 재배하는 경우(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불문)
 - 해외에서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 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한, 해당 해외 국가가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해외 국가와 이익공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
 -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 국가일 것이므로 우리 국내법에 따라 국내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가 결정되게 됨
- 만일 해당 종이 해당 해외 국가에서도 자생하는 종일 경우(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불문)
 -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우리 자생종을 외국에 가져다가 재배해서 들어오는 것이라도 결국은 해당 외국의 자생종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해당 국가의 ABS법률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배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해당 국가와 상호합의조건이나 재배계약을 마련하여 나고야 의정서 상의 이익공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합의할 필요 있음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3항, 제7항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1조



해외 특정 국가에만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국내에서 반입·재배하여
그 유전자원을 이용한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논점

- 해외 생물자원을 반입 후 재배하여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 여부

해설

- 국내에서의 단순 재배로 인해 해외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은 아님
 - 국내에서 현지 내 상태, 즉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이거나, 사육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 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일 경우에만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의 생물자원을 국내에서 단순히 재배하여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국의 법령이 사전통보승인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제재에 직면함은 물론, 생물해적행위(biopiracy)이라는 국제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주목
- 그러나 외국 생물자원(예, 뉴질랜드 키위)을 국내에서 단순 재배(예, 제주도)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6조



지금까지(나고야 의정서 발효 전)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될 수 있는가?



논점

-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연구·개발된 유전자원 관련 제품을 “계속하여 상업화하는 경우”
-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연구·개발된 유전자원 관련 제품을 “새로운 용도로 상업화하는 경우”

해설

- 기본적으로 나고야 의정서도 조약이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8조에 따라, “조약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나 사실, 그리고 중단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약불소급 원칙이 적용
 - 그러나, 위 제28조 자체가 “해당조약이 소급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나 다른 상황에 의해 소급의도가 밝혀진 경우”에는 소급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나고야 의정서는 명시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나고야 의정서 자체가 소급적용될 수는 없음 (예, 나고야 의정서 발효 전 취득한 유전자원의 점검기관 신고의무, 점검기관 및 Clearing House 설치 의무 등)
 - 그러나, 의정서 제3조(범위)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되며,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통보승인 의무와 이익공유 의무는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 취득된 유전자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개도국의 주장이 있음
- 이것은 반드시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의 시점을 생물다양성협약 발효시(1993년 12월)까지 소급한다는 의미는 아님
 - 나고야 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선언함으로써 소급적용 주장의 근거로서도 활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음
- 아울러 국제 동향을 고려해 볼 때,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이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원칙이 선언되었음을 근거로 나고야 의정서의 소급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원산지국이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마련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시점(1993년 12월)까지 소급하여 적용됨을 규정하는 경우, 향후 심각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나고야 의정서 제5조에 따르면 이익공유 대상은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임

- 비록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의정서 발효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이러한 개발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거나 제품을 상업화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향후 심각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운 용도(new utilization)”로 상업화하는 경우에도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된다는 개도국의 주장이 있음
-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제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일단 자원 제공국 측에서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적용시점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 나고야 의정서 제3조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8조



2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이 CBD 사무국의 웹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논점

-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을 확인하는 방법

해설

- 나고야 의정서 제13조에 따르면, 의정서 당사국들은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각 당사국은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들의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목록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음
 - “Lists of National Focal Points” (www.cbd.int/information/nfp.shtml)를 참조
- 만일 외국의 관련 정보를 상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이나 국가책임기관에 문의하거나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www.cbd.int)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유의할 점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우 특정 지역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토착지역공동체에게 부여한 경우가 있으므로 토착지역공동체를 해당 책임기관이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해당국가의 ABS 법률에서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3조 제1항, 제2항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에 대해 정보를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논점

-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정보

해설

- 먼저 해당 국가의 ABS Clearing House를 살펴보는 것이 용이함
- 나고야 의정서 제13조에 따르면 의정서 당사국들은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가연락기관은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책임기관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각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정보는 각국의 국가연락기관 혹은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또한 의정서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의 제2항에는 각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 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충실히 기능을 한다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들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홈페이지의 “ABS Measures Search Page” (www.cbd.int/abs/measures/)에서 각국의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만일 외국의 관련 법규 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혹은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이나 국가책임기관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음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1항 나고야 의정서 제13조 제1항, 제2항



논문에 게재된 유전공학적 정보를 활용해 특정 화합물을 합성하고 제품화한 경우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 되는가?

논점

- 유전자원의 “이용”의 개념

해설

- 먼저 유전자원의 유전공학적 정보를 발표한 사람(논문 저자)이 ‘언제’ 유전자원을 취득하였는가가 중요함
- 만약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한 1993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임
-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 이후 취득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연구한 유전공학적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의정서의 정의상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미
 - 관련 정보를 타인의 논문에서 습득했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습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개발행위가 있으면 의정서에 적용됨
- 화합물 합성의 경우에도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개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아님
- 유전자원이나 파생물을 바탕으로 일반 의약품을 단순 복제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복제 대상인 특허 의약품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원산지국과 접근허가와 이익공유 행위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이루어져 유전자원 제공자가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복제약 생산자가 별도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화합물 합성의 경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논의 동향을 주시해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2조, 제5조



백신이나 바이오의약품은 유전정보만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것 또한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이 되는가?

논점

- 유전적 구성성분의 “연구·개발”의 개념

해설

- 유전정보 활용에 있어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개발” 행위가 있으면 이익공유 대상
- 따라서 백신이나 바이오의약품이 유전자원이나 파생물의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연구 과정을 거쳐 제품을 개발한 경우 당연히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임
-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백신이나 바이오의약품은 유전자원이나 파생물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는 의미가 없는 국제조약에 불과할 것임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2조, 제5조

3 사전통보승인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1993년 12월 29일) 전에 이용한 유전자원에 대해 다시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논점

- CBD 발효 이전에 이용한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취득 필요성
- CBD 발효 전 이용한 유전자원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나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 필요성

해설

- CBD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을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에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와 추가적으로 다시 접근하는 경우는 구분하여야 함
- 조약의 불소급 원칙상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가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협약상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이 생물다양성협약 발효(1993년 12월 29일) 이후에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발효일 이전에 당해 국가가 원산지인 유전자원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협약상의 사전통보승인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자원부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전에 이용한 유전자원일지라도 당해 유전 자원을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나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상의 제반의무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용국들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에 행해진 유전자원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의정서상의 제반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나고야 의정서가 이러한 적용시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두가지 주장이 모두 제기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원산지국가가 위 자원부국 입장을 따라 국내법규를 규정하는지 아니면 이용국 입장에서 의정서 발효 이후에만 의정서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의 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유전자원의 소유자(유전 자원이 존재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도 정부의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가?

논점

- 사전통보승인 등 접근 허가

해설

- 나고야 의정서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함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접근 허가(사전통보승인)는 개인이 아니라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 국가의 권리임
- 유전자원 이용자들이 사전통보승인을 해당 자원의 보유자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 신청해야 함을 의미
 - 사전통보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의정서 당사국들의 절대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당사국이 국내법규에 따라 사전통보승인 제도를 면제하거나 축소하여 규정할 수도 있음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국의 국내 법규를 조사하여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해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어느 생물이 복수의 국가에 걸쳐 서식하고 있는 경우(원산국이 하나가 아닐 경우),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면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논점

- 유전자원이 하나 이상의 국가의 영토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경우

해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권한이 있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이다.
 -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 사육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한 유전자원에 대하여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유전자원을 보유하는 국가가 여러개 존재하면 모두가 원산지 국가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 따라서, 이들 원산지 국가 중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으로 선택하고, 그 나라의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밟으면 됨
 - 즉, 여러 원산지 국가들의 접근 절차, 이익공유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공국을 선택하여 그 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면 됨
- 한편, 나고야 의정서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현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유전자원이 여러 국가의 영토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간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향후 동일한 유전자원 보유 국가간 협력의 대상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안데스 산맥 연안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식물에 대해 지역협정(안데스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는 그 협정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앞으로 이러한 국경간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협조 체제가 다소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이러한 지역 협정의 존재여부에도 수시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나고야 의정서 제10조는 ‘월경성 유전자원(transboundary genetic re-

sources)’ 이용에 대한 다자이익공유체계 마련에 대한 고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 협상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제8조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유전자원이 중개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될 경우에는
어떻게 사전통보승인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가?

논점

- 중개업자를 통해 유전자원을 제공받을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

해설

- 유전자원 이용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유전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유전자원 이용자는 중개업자 자신이 유전자원 취득에 있어서 자원제공국의 법령, 행정 조치 등에 따른 절차를 밟은 뒤 허가를 받은 것인지, 또는 중개업자가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전통보승인 허가 시 통상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
-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는 해당 중개업자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복사본을 받고, 중개업자가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들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개업자가 제3자에게 유전자원 이용 권한을 넘겨줄 권한이 있음도 확인해야 함.
 - 이용자와 중개업자간 계약서 안에 명시적으로 중개업자 자신이 자원제공국의 법령, 행정조치 등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 권한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중개업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한 자원제공국이 사전통보승인에 대하여 국내법령 또는 행정조치 등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함
 - 이러한 확인 과정은 다소 번거로우더라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고, 연구활동 및 상업 활동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이때, “중개업자”의 개념에는 유전자원 접근 대행업체 및 유전자원 분야의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 판매업자도 포함될 수도 있음을 주의
-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 한 후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운영되게 되면,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나고야 의정서 제17조 제3항)”를 통해, 중개업자가 제대로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이행준수인증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포함되어야 함
 - 발급 기관, 발급일, 제공자, 인증서 고유 확인, 사전통보승인이 부여된 자나 기관,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나 유전자원,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사전통보승인이 있었다는 확인,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여부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17조 제3항, 제4항





현지 외에서 보전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논점

- 종자은행, 식물원, 동물원, 유전자 은행 등 현지 외에서 보전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

해설

- 종자은행, 식물원, 동물원, 유전자 은행 등 현지 외에서 보전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나고야 의정서 적용 여부는 '취득시점'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된다고 할 수 있음
- 개도국은 나고야 의정서 이전에 원산지국의 서식지에서 수집 등을 통해 현지 외 보전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고야 의정서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직배양, 식물원, 유전자은행, 종자은행, 동물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
- 개도국은 해당 유전자원을 현지 외 보전기관에 제공한 원산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사전통보승인 및 이익공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개도국은 유전자원 이용자는 해당 현지 외 보전기관을 마치 중개업자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유전자원 이용자는 현지 외 보전기관이 유전자원 취득에 있어서 선진국인 자원제공국의 법령, 행정 조치 등에 따른 절차를 밟은 뒤 허가를 받은 것인지 또는 선진국의 현지 외 보전기관이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전통보승인 허가 시 통상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
-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는 해당 현지 외 보전기관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복사본을 받고 해당 현지 외 보전기관이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들 필요가 있음
 - 현지 외 보전기관이 제3자에게 유전자원 이용 권한을 넘겨줄 권한이 있음도 확인해야 함.
- 다른 현지 외 보전기관에게 유전자원을 제공한 자원제공국이 사전통보승인에 대하여 국내법령 또는 행정조치 등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함
 - 이러한 확인 과정은 다소 번거로울지라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고, 연구활동 및



상업활동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제9조 ▶ 나고야 의정서 제6조





학술 목적에 의한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가?

논점

- 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 취득 여부

해설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및 나고야 의정서 제3조 및 제6조는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면제하는 경우를 마련하지는 않고 있음
 - 따라서 순수한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통보승인 허가의 대상이 됨
- 다만, 의정서 제8조는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에 간소한 절차에 따라 허가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각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통상의 사전통보승인보다 간소화된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원산지국의 국내법규를 조사하여 약식절차의 혜택을 누려야 할 것임
 - 아울러, 학술 목적의 연구 이용으로 인한 이익 공유 형태는 논문 발표나 제공국의 과학기술력 향상에 공헌하는 등 비금전적인 것일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 나고야 의정서 제3조, 제8조



A국가에서 어느 고유종인 식물을 관상용으로 구입했다. 귀국 후, 그것을 우연히 연구에 사용하여 그 고유종 특유의 성분을 발견하고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성분을 이용하여 상품화 할 경우, A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가?

논점

-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완료한 경우 사후에 승인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당초 구입시 관상용으로 식물을 구입했는데,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되지는 않음
- 그후,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행위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해야 함
 - 그런데 본 경우와 같이 사전통보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 행위가 완료되어 버린 경우, 개발 제품을 상품화하여 이익을 올리게 되고 그 정보가 해당 유전자원 제공국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 요건 위반이 발생하게 됨
 - 그 결과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에 따른 각종 제재(생물해적행위자로 간주, 행정상 또는 형법상 처벌, 민사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음
 - 나고야 의정서 제17조는 의정서 당사국들이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준수 감시체제가 기능하게 될 것임을 주목해야 함
- 사후에라도 사전통보승인을 신청하고 이익공유 계약을 맺어 상업화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음
 - 해당 국가의 국내 법령상 본건과 같이 우연한(선의의) 연구·개발 행위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추인제도 등)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 사후 구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공유 계약이라도 맺어 이익공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사태만이라도 막아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모든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를 사전에 밟아야 한다는 의식과 관행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인식해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17조



해외의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농가가 호의로 제공해 준 재래의 종자나 작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유전자원으로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점

- 유전자원의 단순 구입·취득 행위와 유전자원 이용 행위 간의 구별

해설

- 종자, 작물 등을 그 원래 목적에 맞게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일반 통상법상의 거래 행위나 기부 행위에 해당하고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되지는 않음 (즉 배추씨를 배추 재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배추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됨)
-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는 이러한 생물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원을 연구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적용
 - 우리나라에 반입된 종자나 작물을 연구·개발하는 작업을 개시하기 직전에 해당 자원의 제공국인 원산지 국가에 사전통보승인을 신청하고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 구체적 절차는 당해 국가의 국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지식에 대한 이해 관계자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점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해관계자 확인
- 전통 지식의 취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상대국의 국가 책임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음

해설

-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률 (domestic law)의 형식으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가입 ‘당시’ 토착지역공동체의 존재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존재를 주장해야 함으로 먼저 해당국가의 ABS법률을 살펴 보아야 함(동 사항은 ABS Clearing House에 반드시 통보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 의정서에 “전통지식”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나고야 의정서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관련 조항이 있음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2조, 제16조 등)
 - 토착지역공동체(ILCs :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적용되며, 각 당사국이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사회와는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격리된 토착지역공동체가 아닌 집단이나 사회가 보유한 지식은 나고야 의정서에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이 아님을 주의
 -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지역 사회의 관습법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구체적 허가 및 이익공유 방식을 준수해야 함
- 나고야 의정서 상에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publicly available)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은 제외
 - 중국과 인도 등 일부국가는 국내법으로 나고야 의정서상의 체제가 적용되는 전통 지식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오래전에 외부로 유출되어 보편화된 전통지식까지도 이익공유 대상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음
- 국내법에 의해 사전통보승인의 취득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통지식이 토착 지역공동체에 의해 ‘집단’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토착지역공동체가 같은 전통 지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와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해당 집단 전체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 대상 및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해당 국가의 국가책임기관 등에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상호합의조건



일반적으로 상호합의조건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규정되고 고려되는가?



논점

- 상호합의조건 내용
-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이해와 상대국 국내 법규나 행정적 조치에 대한 종합적 고려

요지

- 상호합의조건은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서면계약 형태로 체결되며, 상호합의조건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개별 사안별로 달라짐
 - 일반적으로 상호합의조건 계약서에는 (i) 해당 유전자원 관련 정보, (ii) 이익공유 조건, (iii) 접근 행위의 범위, (iv) 허용 자원의 잠재적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v) 원산지국의 주권적 권리 인식, (vi) 이용의 변경과 같은 특정 환경 하에서의 계약 조건이 재협상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조항, (vii) 유전자원이 제3자에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전될 경우의 조건, (viii) 해당 지역사회 및 토착민의 지식 및 관습의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 (ix) 전통적 관습에 따른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x) 기밀정보의 취급관련 사항, (xi) 파생물 관련 사항 및 그 이익의 공유와 관련된 조항 등을 기재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 상대방과 상호합의조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할 때 해당국가의 국내법이나 행정 조치상의 요건이나 제한사항들을 미리 검토해야 함
- 또한 일반 계약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행 등도 조사해두어 혹시 계약 취소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련 법제가 정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
- 특히 나고야 의정서 제18조는 (i) 모든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ii)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iii)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등을 상호합의 조건에 포함될 내용으로 권고하고 있음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원산지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이용하려하는 경우,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가?

논점

- 파생물의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문제와 이용의 장소 문제

해설

- 이익공유의 대상은 유전자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원의 이용”이므로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가 의정서 범위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
 - 나고야 의정서 제2조(e)항에서는 ‘파생물’을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고 정의
 - 또한, 나고야 의정서 제2조(c)항의 정의상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즉, 반드시 유전적 성분에 대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그것도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 유전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파생물의 경우에도 그것이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 성분”인 한,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
-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파생물에 대한 사전접근허가와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이 국가가 원산지인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물을 취득한 경우, 그 국가의 법규에 따른 이익공유를 해야 함
 - 파생물의 생산 장소 또는 파생물의 이용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어디이냐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자원의 원산지국이 이익공유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익공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전통보승인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해당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통보동의(PIC)를 취득하여야 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나고야 의정서 제2조(c), (d), (e), 제3조



상호합의조건의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점

- 상호합의조건 교섭
-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

해설

- 상호합의의 조건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 성사여부에 의존하므로,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교섭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교섭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는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
- 까다로운 계약조건에 직면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
- 이때 국제적으로 원용 가능한 해당 분야의 표준 계약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다른 유전자원 제공자를 찾아 또 다른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상 적용가능한 대안일 것임
- 이용자의 국적국은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만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 2013년 12월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에도 사전통보승인을 받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자원제공국이 제시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유전자원은 이용할 수 없는가?

논점

-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강제성의 이해

요지

- 나고야 의정서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이익공유 계약의 체결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그 조건의 과도함과 불공평성 에 관한 논리적 설득을 통해 상호 조건을 수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
- 만일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자원제공자가 상호합의의 조건을 제시하고 원안을 끝까지 고수하는 경우, 그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의 수용이 필요
-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해당 유전자원과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원산지국가와 새로운 교섭을 진행하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
- 산업계는 동일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원산지국가를 먼저 파악하여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품 개발이 장기화될 경우, 자원제공국과의 이익공유는 언제 하면 되는가?

논점

-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시점

해설

- 사전통보승인의 경우는 의정서가 “사전에(prior)”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행위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유전자원의 “이용 (utilization)”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까지도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규정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인 제품출시 이전에만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볼 수 있음
- 의정서 각 당사국이 국내 법규로 사전통보승인의 조건 중 하나로 이익공유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개발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법규가 사전에 이익공유 계약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사후에 체결된 이익공유 계약에 대한 추진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후에라도 이익공유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참고로 제품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후 단계일수록 상대방이 이익공유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고려하여 적절한 이익공유 계약 체결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협상전략상 필수적임
- 상업적 이익이 높은 유전자원일수록 이익공유계약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6조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했으나, 상용화하지 못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 이익공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논점

- 이익공유 계약의 본질

해설

-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이 존재함(나고야 의정서 부속서 참조)
-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 합의란 “발생한 이익(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합의를 의미
 - 따라서 금전적 이익이 없으면 이익공유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므로 금전적 공유도 없지만 제공국은 유전자원 연구 이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점을 유념하여 이익공유 계약서의 문구작성에 주의를 해야 함
- 나고야 의정서 부속서에 예시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 금전적 이익 : 수집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한 표본에 대한 접근료/접근료들; 선급금;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로열티 지급액; 상용화의 경우 면허료;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특별 부담액; 상호 합의된 경우 봉급 및 우대 조건; 연구 지원금; 합작투자; 지적재산권 공동 보유
 - 비금전적 이익 :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내,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제품 개발 참여;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유전자원 현장 외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합의된 양보 및 우대 조건에 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에게 이전하는 지식 및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명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제도적 역량 강화;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할 경우 그러한 국가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관련 훈련; 생물학적 자료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내 유전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최우선 요구를 다루는 연구;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 및 후속 협력 활동 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식량 안보 및 생계 유지의 이익; 사회적 인식;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보유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및 그 부속서

상호합의조건 계약서 작성 시, 상용화하였다더라도 이익발생이 없으면 이익공유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포주를 외국회사에서 사왔을 경우, 이익공유의 대상은 누구인가?

논점

- 유전자원 원산지 개념

해설

- 세포주도 유전자원이므로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임
- 세포주를 연구, 개발하여 후속적 응용을 하거나 상업화 하는 경우 그 모든 이익은 원칙적으로 세포주의 원산지국가와 공유를 해야함
- 세포주를 사용해 독특한 특성을 가진 세포를 개발하였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외국회사가 세포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후속적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관련 내용이 사전통보승인이거나 상호합의조건에 없는 한 원산지국가 이익 공유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유의할 점은 외국회사로부터 세포주를 구매할 때 외국회사가 세포주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 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동 세포주를 제3자에게 양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용도변경은 가능한지, 다시 원산지국가와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등을 기재한 상호합의조건 계약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중개업자를 통해 유전자원을 제공받은 경우, 이익공유의 대상은 누구인가?

논점

- 이익공유의 권리주체

해설

- 외국의 중개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전통보동의 문서와 상호합의조건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이익공유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는 한 원산지국가가 이익공유의 주체임
- 중개업자는 단순한 판매자이기 때문에 이익공유의 권리주체가 아님
-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 국가가 이익공유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할 경우에는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가 이익공유 권리자가 되며, 이익공유의 주체를 사유 재산권자에게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자원의 소유권자가 이익공유 권리자가 된다.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전통지식의 경우, 누구와 이익공유를 하여야 하는가?

논점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지 개념

해설

-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은 ‘모든 전통지식이 아닌’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임’
-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달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에 취득한’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만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이익공유의 주체도 토착지역공동체에겐 있으므로, 국가는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나고야 의정서의 이익공유 대상인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 자원관련 전통지식에 한함
 - 주류사회와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단절된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지식인지, 유전자원 관련 지식인지(침술, 마사지 기술 등은 유전자원 관련 지식이 아니므로 제외됨)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만일 여러나라에 걸쳐 토착지역공동체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착지역공동체가 모두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지 국가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토착지역공동체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됨
- 나고야 의정서 제7조는 전통지식관련 이익공유는 “해당국의 국내법규에 따라(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진행할 것을 규정
 -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결여부와 조건을 추진해야 함
- 관련 전통지식이 토착지역공동체가 없는 국가와 토착지역공동체가 있는 국가에 모두 있는 경우에는 토착지역공동체가 없는 국가의 전통지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전통지식 관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고민하여야 함. 후자의 경우는 유전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제공국은 위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토착지역공동체가 여러 당사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ABS법률을 검토한 후 가장 유리한 국가에 접근할 수 있음
- 공유 전통지식의 이용이익의 부차적 공유는 해당 당사국들의 몫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의 ABS법률을 검토하여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7조, 제11조



유전자원 및 해당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함께 이용하였을 경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다르다면 누구와 이익공유를 하여야 하나?

논점

- 이익공유 권리자 주체

해설

-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대한 이용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
 - 각각 해당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원산지 지위에 있는 주체와 별도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는 소재 국가의 ABS에 법률에 따라 확립된 권한을 가지는 경우 유전 자원에 대해서도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의정서 제5조 제2항)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소재 당사국의 허가, 승인, 인정 없이도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전통지식이 함축되어 있는 유전자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
 - 첫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당국의 ABS 법률(해당국은 동시 이용의 경우 관련 전통지식의 권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해당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 여부(동 공동체와 사전통보 승인과 상호합의조건 등 의무를 준수하면 됨)
 - 셋째, 권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원산지국가와 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 취득하여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경향에 있음을 주의해야 함
 - 생물다양성협약은 토착지역공동체의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에 대해서만 이익공유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나고야 의정서는 토착지역공동체에게 관련 전통지식은 물론 유전자원(국내 ABS법률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의 이용에 대한 참여권까지 인정
 - 의정서 제5조제1항과 제11조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와 여러 나라에 걸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협력에 있어서 토착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 만일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 혹은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를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항, 제5항, 제7항, 제11조, 제12조



수입업자로부터 외국의 식물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한 추출물을 개발하여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의 원료로 판매를 하는 경우, 원산지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수입업체가 원산지국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관련 제품 매출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이익공유를 해야 하나? 또한 식물 추출물과 관련해 특허를 낸다면 나고야의정서와의 관련성이 있는가?

논점

- 이익공유 책임자 및 이익공유와 특허권과의 관계

해설

- 해당 식물의 수입자로부터 그 원산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 나라의 국내법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사전접근허가와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함
 - 결국은 제품 개발 업체에 이익공유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원산지를 알아내고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 또한 개발업체가 지게 됨
 - 제품 매출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일지라도 이러한 기본 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 특허에 대한 권리는 제공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으로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조건에 사실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익 창출 시에는 특허권을 소유하는 것 보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특허권은 이용자가 가지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호주 ABS 입법례)
- 특허 출원시 강제적 출처 공개의 요건은 WTO TRIPs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지만, 당사자간 상호합의조건으로 합의한 자발적 출처공개는 위반가능성이 없음
- 특허 출원 시 출처 공개의 문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 출처 확인이 어려운 미생물이나, 나고야 의정서 발효 전 취득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선진국의 입장과 관련하여 발생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7조1(a), (i)항



제품 개발 기업이 공표한 논문상의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에 연구·개발한 곳에서 원료에 대한 이익공유가 되어있지 않을 수 있음. 이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으로 연구·개발된 사례를 국내에서 단순히 가공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우리 기업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또한, 원산지 국가와 우리 기업이 직접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연구·개발자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게 될 경우,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논점

- 이익공유 의무의 본질에 대한 이해

해설

- 타인의 남의 논문을 바탕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이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연구·개발이라면,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이라 볼 수 있음
 - 자신의 재원과 노력을 들인 원래 개발자도 이익공유를 해야 하며, 그만큼 연구·개발 단계의 비용을 절감한 후속 업체들의 경우 이익공유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나고야 의정서 제5조의 이익공유조항에서도 유전자원의 “이용” 뿐만 아니라 후속 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대한 이익의 경우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가공판매업체의 이익도 공유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임
- 제품의 원래 개발자가 정당한 이익공유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 가공업자나 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이익공유계약을 추후이라도 맺어야 나고야 의정서상의 제재 위험을 피해할 수 있음
 - 최악의 경우, 최초 개발업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한 경우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최초 개발업자는 원산지국가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만 제3자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유전자원 근거 가공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 대해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 취득 여부, 상호합의조건 계약 체결 여부, 관련 ABS 법률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탐색, 보관하여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유의
- 이익공유계약 때문에 드러나는 정보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걸리는 것은 별도의 지식재산권법제하에서 일어날 수 있음
 - 다만, 사전통보승인이나 이익공유계약을 맺을 때, 기업 비밀정보 보호를 요청해서,

가급적 유전자원 이용의 상세 “source(누구의 논문 참조 등)”까지 공개되지는 않도록 노력해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특히 출원시 강제적 출처 공개의 요건은 WTO TRIPs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로 자발적 출처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5 분쟁해결



알선, 조정,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의 이점은 무엇인가?



논점

- 나고야 의정서 이행 및 준수 관련 분쟁해결 방식

해설

- 나고야 의정서는 의정서상의 의무준수를 위해 일정한 의무준수체제를 국제적으로 구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은 분쟁해결 방식으로 협상(negotiation), 주선(good offices), 중개(mediation), 중재(arbitration) 및 국제사법재판에 제소(submiss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의 방식을 규정
 -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필요에 따라 원용하도록 우리 정부측에 촉구할 수 있을 것임
-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된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알선, 조정, 중재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식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 분쟁의 제27조와 동 협약 부속서 II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해결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협상과 주선은 분쟁 당사국간의 양자적 해결노력을 말하는데 비해, 중개, 중재 및 재판의 경우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하게 되므로 좀더 형식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됨
 - 중개의 경우에는 제3자의 해결방안 제시가 당사국을 구속하지 못하는데 비해, 중재와 사법재판은 당사국을 구속하므로, 그만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당사국의 부담은 증가하게 됨
 -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가장 확실하고 구속적이며 중립적인 판정을 획득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국제적인 판례가 탄생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음
- 나고야 의정서상의 의무에 대한 당사국의 조약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것임:
 - 1위반당사국에 대한 협의 요청→2미합의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제30조에 따라 설치될 이행준수위원회 고발→3이행준수위원회 결정 및 권고→4미이행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제27조 및 부속서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이용자(개인 또는 기업)의 나고야 의정서 자체에 대한 위반 문제는 별도로 하고, 대부분

의 분쟁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국내 ABS법률과 당사자간의 상호합의 조건 계약을 위반하는데 발생할 것임

- 나고야 의정서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국의 의무준수 감시체제나 국내법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됨
- 만일 과도한 제재나 부당한 제재를 받는 경우, 접근 허가 당국이나 이익공유 상대자가 부당하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규나 이익공유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계약에 합의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임
- 미리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국내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합의조건 계약에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만일 해당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의 국가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이는 단순한 국내법상의 행정조치나 계약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국제조약 위반이 발생하므로, 조약상의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7조 및 부속서 II
▶ 나고야 의정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0조



6 기타



**나고야의정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와 개인은 국제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논점

-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

해설

-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 국민이 제공국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여야 함
 - 특히 점검기관의 효율성,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의 효과성, 파생물 제외와 같은 적용대상의 제한, 유전자원 오용 및 남용에 대한 비효과적 집행, 위반사례에 대한 미약한 협력 등의 경우 접근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 높음
-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 또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나고야 의정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각종 민사상, 행정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나고야 의정서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생물해적행위 (biopiracy)라는 낙인이 국제적으로 찍힐 수 있어 해당 이용자의 신용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앞으로 각국이 규제의 수준을 높이고 감시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국의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어차피 각국의 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굳이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하여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논점

- 나고야 의정서 가입의 의미

해설

- 나고야 의정서에는 대부분의 자원부국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해외 유전자원은 어차피 나고야 의정서 및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규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가 적용되게 됨
- 우리나라가 나고야 의정서 체제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행준수를 상당 부분 담보하는 점검기관이나 Clearing House를 설치하지 않아 외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자체가 금지될 수 있음
 - 또한 우리 국내 유전자원만 해외기업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체제를 용인하는 측면이 있어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 물론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이 우리 자생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가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야 할 실제적 유인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 더구나 자원부국들이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각종 유형 및 무형의 제재를 가해올 가능성이 있음
 -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호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라는 오명을 감래해야 하는 측면도 있음
 - 우리 국가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가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 의정서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논리를 내세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김
 -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 표준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반영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
 - 일본이 유전자원의 주요 이용국이며 나고야 의정서 체제 발족 및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도 우리로서는 적극 참고해야 할 것임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해설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
 - ABS 정보서비스센터(<http://www.abs.go.kr/>)를 통해 궁금한 점에 질의를 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응답
 - 그 외, 나고야 의정서 내용,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정보도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음



4장
사례



알려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이익공유 사례

1)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호주 그리피스 대학 협력¹⁾

- ▶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는 1993년에 호주 그리피스(Griffith) 대학과의 협력 하에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공동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공동연구영역은 호흡기질환, 뇌질환, 통증치료제, 감염성질환, 암, 심장질환 등의 영역.
 - 공동 신약개발·프로젝트는 천연물 신약 개발 프로그램 중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 우림지역의 생물자원에서부터 추출물을 분리하여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분자물질을 찾아내 이를 이용한 신약후보물질을 발굴
- ▶ 퀸즈랜드의 경우 2004년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
 - 이 법이 정하는 이익공유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그리피스 대학은 생물소재발굴에 관한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허가를 획득
- ▶ 이와 별도로 상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호주 환경·수자원·문화유산·예술에 관한 중앙부처(Department of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에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 20만점의 추출물은행 구축, 4만5천점의 생물소재 확보, 800개 이상의 후보물질 보유 등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얻음
 - 이익공유로는 연구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등이 있으며, 로열티의 경우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신약 개발의 성공적 실현에 따라 가능성이 있음

2) 네덜란드 헬스앤퍼포먼스푸드인터내셔널의 에티오피아 테프 이용²⁾

- ▶ 테프(Tef)는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시리얼 작물로서 에티오피아인들의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 ▶ 2004년 에티오피아 농업연구기구(EARO: Ethiopian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와 네덜란드 중소기업인 헬스앤퍼포먼스푸드인터내셔널(HPFI: Health and Performance Food International)간에 테프의 종자개량 및 제품개발에 관한 10년 기한의 이익공유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
 - HPFI사는 테프를 이용한 맥주, 과자류 등의 생산, 유럽시장에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테프의 원산지이자 종자 개량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가장 풍부한 에티오피아와의 협정 체결을 희망
 - 에티오피아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주식인 테프의 국제상품화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협정체결이 이루어짐
- ▶ 그러나, 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협정의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에 관련된 협정 체결권을 법률에 의거해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IBC: Institut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에 위임을 해 놓았으나 HPFI사나 그 에이전트로 역할하는 에티오피아 대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사자간 협정체결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전통보승인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음
 -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인 NGO Coalition Against Biopiracy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 ▶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부의 대표자들이 협상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 제정된 Proclamation No. 482/200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Community Knowledge, and Rights”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협정체결이 다시 이루어짐
- ▶ 이렇게 체결된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테프 종자의 판매 매출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IBC에 지급할 것
 - 원주민 농부들의 경제환경 보호강화를 위한 펀드(FIRST: Financial Resource Support for Tef)에 HPFI사가 순이익의 5% 혹은 연간 20,000유로를 지불할 것
 - 테프와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및 기술이전을 포함할 것
 - HPFI는 에티오피아와 함께 에티오피아 지역 내의 농업, 정미, 정제에 특화된 공동 벤처 기업을 설립할 것
 - HPFI사가 유럽에서 테프를 이용한 기술특허의 등록 및 소유를 승인하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에티오피아와 공유할 것

1)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8.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ractice: Trends in Partnerships Across Sectors. Montreal, Technical Series No. 38 (번역: 국립생물자원관. 2012.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2)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8.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ractice: Trends in Partnerships Across Sectors. Montreal, Technical Series No. 38 (번역: 국립생물자원관. 2012.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3) 덴마크 노보자임사의 케냐 펄프자임 이용³⁾

- ▶ 노보자임(Novozymes)사는 2007년 케냐의 야생생물청(KWS: Kenya Wildlife Service)와 케냐의 국립공원으로부터 미생물을 수집, 분류, 특성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활동함
 -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전에 진행되었던 생물소재 수집 프로그램의 결과 개발한 펄프자임(Pulpzyme)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협약체결을 공식화할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
 - 펄프자임은 기존 보다 더 적은 양의 염소로 목재펄프를 표백할 수 있음
 - 사전통보승인은 케냐의 야생생물청의 허가로 이루어졌으나, 케냐의 관련 법률의 미흡으로 권하 이 불분명함
- ▶ 노보자임사는 협약에 펄프자임의 누적매출액 대비 로열티 지급과 향후 발생하게 될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보상조건으로 포함시킴
 - 노보자임사가 2007년 미생물 자원 수집활동에 투자를 한 것은 산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전에 케냐에서 진행된 산업적 목적의 미생물 자원 탐사 수집 결과 발생한 산업적 이익에 대해 생물자원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 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프로젝트임
 - 체결된 계약의 내용 또한 금전적인 이익공유 방안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부각됨
- ▶ 노보자임사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국제곤충생리생태학센터(ICIPE: International Centre for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는 생물자원의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면서 생물자원을 이용한 빈곤퇴치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
 - ICIPE는 KWS와의 협약⁴⁾에 의거하여 생물소재 수집 및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민간기업과의 연구개발협력도 동시에 수행함
 - 노보자임사는 샘플의 수집 및 연구조사활동 비용으로 KWS에 대해 선급기술료를 지불함. 만약 노보자임사가 KWS의 연구조사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여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일스톤(개발단계에 따른 추가 기술료)을 지급하여, 해당 연구조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노보자임사와 KWS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짐

4) 후디아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ABS 협정⁵⁾

- ▶ 후디아(Hoodia)는 남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다육식물로 남아프리카 토속부족인 샌족에서 식욕 억제용으로 사용
- ▶ 1995년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South African based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는 샌족의 승인 없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P57) 사용에 관한 특허 획득
 - 1998년 영국계 기업인 파이토팜(Phytopharm)사에 특허 성분을 개발하고 상업화 할 수 있는 라이선스 무료로 제공
 - 2004년 파이토팜사는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유니레버(Unilever)사와 후디아의 식욕 억제 활성 물질을 추출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업화하기 위해 공동개발협정을 체결
- ▶ 초기에는 CSIR이 노던케이프 자연보전이사회(Northern Cape Directorate of Nature Conservation)에서 후디아 채취에 관한 지역적 수준의 승인 취득
 - CSIR-파이토팜 계약 발효 이후 남아공 환경관광부(DEA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nd Tourism)에서 승인
- ▶ 그러나, 초기 CSIR는 전통지식보유자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절차를 소홀히 함
 - 샌족은 후디아에 관련된 지식을 상업적으로 활용, 연구, 특허 신청되었다는 사실 모름
 - 남아프리카 비정부단체는 “CSIR-파이토팜 간의 협정이 잠재적으로 착취적 성격”이라고 홍보
- ▶ 2002년 부터 샌족 단체들이 선임한 변호사들과 CSIR간 협상 진행되어 3개월 후에 CSIR과 남아프리카 샌족 위원회(South African San Council)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SIR은 샌족을 후디아 사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및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후견인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지식인 지난 1세기에 걸쳐 서양 문명이 개발한 과학적 지식보다 선행함을 인정
 - CSIR은 샌족을 그들의 지식, 혁신 및 관행에 대한 관리인으로 인정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함
 - 샌족이 물질 이전, 정보 이전, 이익 공유와 관련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CSIR이 처음으로 P57의 특허를 출원한 맥락에 대한 CSIR의 설명을 인정하고 받아드림
 - 샌족을 후디아 사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소유자로 인정

3)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8.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ractice: Trends in Partnerships Across Sectors. Montreal, Technical Series No. 38 (번역: 국립생물자원관. 2012.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4) 이와 관련된 ICIPE의 표준협약문은 <http://www.wipo.int/tk/en/databases/contracts/texts/html/icip.html>에서 구할 수 있다.

5)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8.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ractice: Trends in Partnerships Across Sectors. Montreal, Technical Series No. 38 (번역: 국립생물자원관. 2012.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 후디아의 전통적인 사용 및 P57에 대한 CSIR 특허권 관련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CSIR 에게 있다. 샌죽 위원회는 특허권 또는 당해 특허에서 파생된 상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음
- CSIR과 샌죽은 구체적인 이익공유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함
- ▶ 이후 18개월 동안 이익공유 협상을 진행
 - CSIR이 제안한 3%의 로열티에 대해 샌죽은 10%의 로열티를 요구
 - 2003년 3월 채택된 이익공유 협정에 따르면, 샌죽은 제품을 성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파이토팜이 CSIR에 지불한 총 로열티의 6%를 가지게 됨
 - 또한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경우 샌죽은 파이토팜이 CSIR에 게 지불하는 마일스톤 수익의 8%를 가짐
 - 이러한 이익은 CSIR과 남아공 샌죽 위원회가 남아공에 거주하는 샌죽의 삶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기금에 제공
 - 전반적으로 샌죽은 제품 순매출액의 0.03%의 이익을 공유

5) 스위스 노바티스와 태국 바이오테크의 협력

- ▶ 태국 바이오테크(BIOTEC)는 미생물의 수집, 확인, 보존부터 배양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미생물에 대한 지식과 미생물로부터 얻어진 자연혼합물의 분리와 사전 공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함
 - 반면, 스위스 노바티스(Novartis)사는 합성물과 자연물에서 추출하는 화합물의 발견, 개발, 나아가 세계적 상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음
- ▶ 바이오테크와 노바티스사의 협력관계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원천으로서 미생물과 미생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자연화합물의 이용가능성을 찾는 데 목적이 있음
 - 1단계 협력관계는 2002년 협력관계가 맺어진 이래 3년 후인 2005년에 만료됨
 - 2단계 협력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됨
- ▶ 1단계 협력에서 2,500개 이상의 미생물 분리체와 70개의 순수 화합물이 연구됨
 - 미생물 분리체의 상당수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입증되어, 미생물 분리체로부터 얻어진 순수 혼합물과 추출물이 노바티스사의 연구 분야인 감염, 심장질환, 종양, 면역에 신약으로서 적합한지는 연구 중임
 - 협력 관계 동안에 얻어진 미생물의 분류, 추출의 전문성을 통해, 바이오테크는 2,500개 이상의 미생물 분리체를 발견했으며, 이는 태국의 자산으로서 바이오테크의 배양 수집 보관소에서 보관되고 있음
 - 보관소에 있는 것들은 바이오테크와 노바티스사의 협력 관계 외에도 태국 내 연구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연구협력에 외에도, 스위스에 있는 노바티스사 연구실에서 바이오테크 과학자들이

인턴십을 거치는 것과 바이오테크에서 노바티스사 전문가들이 연구 수업과 세미나를 진행 하면서 능력 배양이 이루어지는 것도 협력관계의 한 부분임

- 협력은 바이오테크와 노바티스사 각각 한명의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조종위원회(JSC: Joint Steering Committee)에 의해 관리됨. JSC를 통해서 노바티스사와 바이오테크의 연구자들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동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연구결과를 공유, 연구계획을 논의하면서 더 나은 결정에 이를 수 있었음. 1단계 협력 동안에 5번의 JSC 회의가 개최됨
- ▶ 2단계 협력에서 바이오테크는 노바티스사가 제약 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미생물과 자연화합물을 공유함
 - 공동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외에도, 협력 관계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에 대한 원칙을 반영
 -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바이오테크가 제공하는 물질로부터 개발된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 테크는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비율로 로열티를 받음
 - 지속적인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노바티스는 제약개발기술 분야 관련 3개월 단위로 총 6번의 인턴십을 태국과학자들에게 제공함. 이외에도 노바티스사는 태국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할 전문가를 파견함
 - JSC는 2단계 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



2 이익공유 협상이 진행 중인 사례

1) 영국의 레이체스터 대학 및 미국의 제네코사의 케냐 인디지, 푸라닥스 이용⁶⁾

- ▶ 영국 레이체스터(Leicester) 대학과 바이오 화학 회사인 제네코사(Genecor)는 1992년 케냐 Rift 계곡에 위치한 극 알칼리성 호수에서 생물자원을 채집
 - 인디에이지(Indiage)와 푸라닥스(Puradax)로부터 데님을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러운 탈색효과가 있는, 화학표백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효소 발견
 - 레이체스터대학과 제네코사는 효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
 -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2000년에는 제네코사의 연간보고서에 새로운 상품으로 설명
- ▶ 이에 대해 케냐 야생생물청(KWS: Kenya Wildlife Service)은 샘플 수집에 어떤 승낙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생물자원의 수집을 언급하며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
 - 유전자원이 사람이 살지 않는 보호지역에서 수집된 것이나, 이 보호지역의 경계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6) IUCN, Covering ABS, IUCN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aper No. 67/5, 2009, 131~135면.

3 관련 법률 제정 혹은 무역 제재 사례

1) 페루 마카

- ▶ 마카(Maca)는 페루가 원산지인 뿌리식물로서 '안데스의 산삼' 또는 '천연 비아그라'로 일컬어지며 성기능 강화제로 민간요법으로 수세기에 걸쳐 이용
- ▶ 2001년 PureWorld Botanicals사가 미국에서 마카의 추출물인 'MacaPure'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았으나 페루 농민들이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며 반대운동을 시작
- ▶ 이후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시켜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 페루정부 및 토착지역사회와 일정한 비율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됨

2) 인도 지바니 이용⁷⁾

- ▶ 지바니(Jeevani)는 열대식물원·연구원(TBGRI: Tropical Botanic Garden and Research Institute)의 과학자들에 의해 인도 남부 케랄라(Kerala)지역의 아로지아파아차(Arogyapaa-cha)라는 식물과 이 식물을 이용한 전통의약지식에 기반하여 개발된 치료약으로서 항스트레스, 면역력 증강 등에 효과를 가짐
 - 지바니는 12년간의 연구개발 및 대규모의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이 인삼보다도 높으며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될 경우 약효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네이처지나 타임지에도 소개될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
- ▶ 케랄라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통지식과 생물소재에 기반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권리의 이동 및 실행에 대한 권한은 프라티스(Plathis)라고 불리는 해당 부족의 주술사에게 전통적으로 부여
- ▶ 오늘날, 이 치료제에 대한 특허는 과학자들에 의해 2건이 등록되었으며, 지바니의 상용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해 재단이 설립
 - 이 재단은 지바니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운용될 예정
 - 이를 통해 지바니의 지속적 생산에 필요한 생물소재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
- ▶ Arya Vaidya Pharmacy라는 인도의 제약회사에 라이선싱됨
 - 이 라이선싱 수입 중 20만 루피와 50만루피가, 지바니 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한 부족민들에게 일차 배분됨
- ▶ 그러나, Arya Vaidya사에 대한 특허권의 기간만료가 다가오면서 부족민들과 TBGRI간에 향후 계획을 둘러싼 의견충돌이 일어남

7) 특허청, 해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효과적 이용방안 및 합리적 국제 보호방안, 2009, 78면.

- 그 와중에 일본의 제약회사가 해당 식물 유전자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고자 인도정부에 제안하는 일이 있었음

▶ 이를 계기로 인도정부는 지바니의 해외 판매 및 반출을 금지하고 인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됨

3) 태국 프에라리아 미리피카 이용⁸⁾

▶ 태국 북부 산악지대에 생육하는 '프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라는 식물은 멜라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태국에서 하나의 전통지식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

▶ 이 식물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일본의 하쿠쇼 제약은 화장품회사인 코세와 함께 1999년 일본 및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프에라리아 미리피카 추출 엑기스를 함유한 피부외용제를 판매하기 시작

- 이러한 특허에는 농축액의 출처가 「동남아시아에 생육하는 식물」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태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음

▶ 태국이 프에라리아 미리피카의 수출을 금지하여, 제3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음

4 생물해적행위 반대 및 이익공유 요구 사례

1) 페루 사카잉키 이용

▶ 프랑스 원료업체 코그니스(Cognis) 소속 Serobiologiques사는 19세기 한 페루 출신 종교인이 쓴 책에서 기적의 씨앗으로 불리는 사카잉키(Sacha Inchi)를 알게 됨

- 페루 아사닌카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요법 쿠란데라(마을의 영적치유자)를 통해 구술로 전해짐

- 사카잉키는 오메가_3(56.3% 함유)와 오메가_6(35% 함유) 풍부하며 피부미용을 위한 마스크팩으로 만들어져 사용

▶ 2003년 페루에서 8천명의 마을 사람 고용하여 사카잉키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원료 개발 및 특허 등록을 준비 중

- 2007년 페루 정부와 페루 토착민이 함께 자국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를 조직하여 반대 시위를 진행하였음

▶ 협회의 반대 시위로 원료업체 특허 등록은 포기하였으나 해당 원료를 활용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개발 예정

- 그러나 지역주민과 기업의 입장이 서로 달라, 여전히 갈등요소로 존재

2) 브라질 티피르 이용

▶ 캐나다 바이오링크(Biolink)사는 브라질의 녹심목(Chlorocardium rodiei)의 열매인 티피르(Tipir)를 이용한 해열제(Rupununine) 개발

- 1994년 특허 출원(US Patent 5569456; 영국 Conrad Gorinsky와 캐나다 Biolink)

- 티피르는 브라질 및 가이아나 토착지역공동체에서 지혈과 감염방지 및 피임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래

▶ 그러나, 2000년 생물해적행위(Biopiracy)에 대하여 브라질 가이아나의 Wapishana 부족이 이익을 제기하면서 미국 특허청 특허 취소 요구

3) 인도네시아 자무

▶ 1990년도 후반, 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Shiseido)는 인도네시아 자무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등에 관한 51건의 특허 취득

- 자무는 인도네시아 전통약용식물의 총칭으로 수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 2000년 초, 현지 비정부단체가 인도네시아 민간의 생물자원에 대한 무단 사용 반대운동 시작

- 생물해적행위로(Biopiracy)로 규정하고, 대중워크숍, 기자회견, 로비활동 등 반대운동

▶ 실제로 위법한 이용은 없었지만, 시세이도는 기업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2002년 특허 철회

8) 환경부,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 영향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연구」, 2009, 31~32면.

부록



생물다양성협약, 본 지침, 나고야 의정서 전문을 살펴 보시다.

...

생물다양성협약

...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전문

체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내재적인 가치와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생태학적, 유전학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휴양적 및 미학적인 가치를 의식하고,

진화와 생물계의 생명유지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가진 중요성을 또한 의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국가는 자신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또한 국가는 자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특정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적절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과학적·기술적 및 제도적인 능력을 시급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원산지의 생물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손실되는 원인을 예측·방지 및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유의하고,

Preamble

The Contracting Parties,

Conscious of the intrinsic valu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of the ecological, genetic, social, economic, scientific, educational, cultural, recreational and aesthetic values of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components,

Conscious also of the importance of biological diversity for evolution and for maintaining life sustaining systems of the biosphere,

Affirming that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s a common concern of humankind,

Reaffirming that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ver their own biological resources,

Reaffirming also that States are responsible for conserving their biological diversity and for using their biological resources in a sustainable manner,

Concerned that biological diversity is being significantly reduced by certain human activities,

Aware of the general lack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regarding biological diversity and of the urgent need to develop scientific,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to provide the basic understanding upon which to plan and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Noting that it is vital to anticipate, prevent and attack the causes of significant reduction or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at source,

또한 생물다양성이 현저히 감소 또는 손실될 위협이 있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이러한 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책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또한 유의하고,

나아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현지 내 보전과 자연환경 속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에 있음을 유의하고,

나아가 현지의 조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조치는 가급적 원산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유의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는 토착민사회 및 지역사회는 생물자원에 밀접하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 지식·기술혁신 및 관행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정책결정 및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부문간의 국제적·지역적 및 범세계적 협력증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이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세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과 관련기술에의 적절한 접근을 포함하여 특별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의 특별한 사정을 유의하고,

Noting also that where there is a threat of significant reduction or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ould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measures to avoid or minimize such a threat,

Noting further that the fundamental requirement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s the in-situ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natural habitats and the maintenance and recovery of viable populations of species 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Noting further that ex-situ measures, preferably in the country of origin, also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Recognizing the close and traditional dependence of man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on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desirability of sharing equitably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Recognizing also the vital role that women play i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affirming the need for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nd the need to promote, international,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non-governmental sector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cknowledging that the provision of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appropriate access to relevant technologies can be expected to make a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world's ability to address the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Acknowledging further that special provision is required to mee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appropriate access to relevant technologies,

Noting in this regard the special condition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States,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투자로부터 광범위한 환경적·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이 기대됨을 인정하고,

경제·사회개발 및 빈곤퇴치가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과제를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증가하는 세계인구의 식량·건강 및 그 밖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전자원 및 유전기술에의 접근과 공유가 긴요함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인류의 평화에 공헌함에 유의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합의를 강화·보완할 것을 희망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구될 것인 바,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자원 제공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Acknowledging that substantial investments are required to conserve biological diversity and that there is the expectation of a broad range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from those investments,

Recognizing tha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are the first and overriding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ware tha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s of critical importance for meeting the food, health and other needs of the growing world population, for which purpose access to and sharing of both genetic resources and technologies are essential,

Noting that, ultimately,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will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and contribute to peace for humankind,

Desiring to enhance and complement existing international arrangements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Determined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o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provisions, ar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y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y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those resources and to technologies, and by appropriate funding

제2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해양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한다.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자원”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생명공학”이라 함은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유전자원 원산국”이라 함은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함은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사육 또는 배양종”이라 함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을 말한다.

“생태계”라 함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락과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비생물적인 환경의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현지외 보전”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자연서식지외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Article 2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Biological diversity” means the variability among living organisms from all sources including, inter alia, terrestrial, marine and other aquatic ecosystems and the ecological complexes of which they are part; this includes diversity within species, between species and of ecosystems.

“Biological resources” includes genetic resources, organisms or parts thereof, populations, or any other biotic component of ecosystems with actual or potential use or value for humanity.

“Biotechnology” means any technological application that uses biological systems, living organisms, or derivatives thereof, to make or modify products or processes for specific use.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means the country which possesses those genetic resources in in-situ conditions.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means the country supplying genetic resources collected from in-situ sources, including populations of both wild and domesticated species, or taken from ex-situ sources, which may or may not have originated in that country.

“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means species in which the evolutionary process has been influenced by humans to meet their needs.

“Ecosystem” means a dynamic complex of plant, animal and micro-organism communities and their non-living environment interacting as a functional unit.

“Ex-situ conservation” means the conservation of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outside their natural habitats.

“유전물질”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한다.

“유전자원”이라 함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한다.

“서식지”라 함은 생물체 또는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또는 그 유형을 말한다.

“현지내 상태”라 함은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내 보전”이라 함은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전과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절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전·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보호구역”이라 함은 특정 보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라 함은 일정한 역내의 주권국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그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고 그 내부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기구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은 생명공학을 포함한다.

“Genetic material” means 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Genetic resources” means genetic material of actual or potential value.

“Habitat” means the place or type of site where an organism or population naturally occurs.

“In-situ conditions” means conditions where genetic resources exist within ecosystems and natural habitats, and, in the case of 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in the surroundings where they have developed their distinctive properties.

“In-situ conservation” means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natural habitats and the maintenance and recovery of viable populations of species 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and, in the case of 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in the surroundings where they have developed their distinctive properties.

“Protected area” means a geographically defined area which is designated or regulated and managed to achieve specific conservation objectiv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eans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and which has been duly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to sign,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it.

“Sustainable use” means the use of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in a way and at a rate that does not lead to the long-term decline of biological diversity, thereby maintaining its potential to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echnology” includes biotechnology.

...
제3조 원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관할 또는 통제지역안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자신의 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
제4조 관할 범위

다른 국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 협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규정이 각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경우, 자신의 관할권안의 지역
- 나.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권하에서 수행된 과정 및 활동의 경우, 그 효과가 미치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관할지역안 또는 관할권 이원지역

...
제5조 협력

각 계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및 그 밖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다른 계약당사자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협력한다.

...
제6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 및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Article 3 Principle

States hav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right to exploit their own resources pursuant to their own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do no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or of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
Article 4 Jurisdictional Scope

Subject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 an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y, in relation to each Contracting Party:

- (a) In the case of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in areas within the limits of its national jurisdiction; and
- (b) In the case of processes and activities, regardless of where their effects occur, carried out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within the area of its national jurisdiction 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
Article 5 Cooperation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e with other Contracting Parties, directly or, where appropriate,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respect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on other matters of mutual interes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
Article 6 General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particular conditions and capabilities: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특히 이 협약에 명시된 해당 계약당사자와 관련된 조치를 반영하는 기존의 전략·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취지에 맞게 수정한다.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 개발분야별 또는 분야간별 계획·프로그램 및 정책에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통합한다.

...
제7조 확인 및 감시

각 계약당사자는 특히 제8조 내지 제10조의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부속서 I 에 규정된 범주의 예시적 목록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요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한다.

나. 긴급한 보전조치를 필요로 하거나 지속가능한 이용에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하는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가호에 따라 확인된 구성요소를 표본조사 및 그 밖의 기법을 통하여 감시한다.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활동의 진행과정 및 범주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표본조사 및 그 밖의 기법을 통하여 감시한다.

라. 가호 내지 다호에 따른 확인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정리한다.

(a) Develop national strategies, plans or programm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or adapt for this purpose existing strategies, plans or programmes which shall reflect, inter alia, the measures set out in this Convention relevant to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and

(b) Integrate,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to relevant sectoral or cross-sectoral plans, programmes and policies.

...
Article 7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in particular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8 to 10:

(a) Identify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important for its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having regard to the indicative list of categories set down in Annex I;

(b) Monitor, through sampling and other techniques, the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identified pursuant to subparagraph (a) above,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requiring urgent conservation measures and those which offer the greatest potential for sustainable use;

(c) Identify processes and categories of activities which have or are likely to hav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monitor their effects through sampling and other techniques; and

(d) Maintain and organize, by any mechanism data, derived from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activities pursuant to subparagraphs (a), (b) and (c) above.

...

제8조 현지내 보전

...

각 계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조치를 취한다.

- 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지역제도를 수립한다.
- 나.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또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지역내외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 라.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절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한다.
- 마.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 바. 특히 계획 또는 그 밖의 관리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악화된 생태계를 회복·복원시키며 위협받는 종의 회복을 촉진한다.
- 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에 의한 생물변형체의 이용 및 방출에 연관된 위해성을 규제·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을 수립 또는 유지한다.
- 아. 생태계·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고 이들 외래종을 통제·박멸한다.

...

Article 8 In-situ Conservation

...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 (a) Establish a system of protected areas or areas where special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conserve biological diversity;
- (b) Develop, where necessary,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or areas where special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conserve biological diversity;
- (c) Regulate or manage biological resources important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whether within or outside protected areas, with a view to ensuring thei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 (d) Promote the protection of ecosystems, natural habitats and the maintenance of viable populations of species in natural surroundings;
- (e) Promot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reas adjacent to protected areas with a view to furthering protection of these areas;
- (f) Rehabilitate and restore degraded ecosystems and promote the recovery of threatened species, inter alia,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or other management strategies;
- (g) Establish or maintain means to regulate, manage or control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use and relea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resulting from biotechnology which are likely to hav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s that could affect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aking also into account the risks to human health;
- (h) Prevent the introduction of, control or eradicate those alien species which threaten ecosystems, habitats or species;

- 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차.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민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 카. 멸종위기에 처한 종 및 개체군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또는 그 밖의 규제적인 규정을 제정 또는 유지한다.
- 타.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의 관련 진행과정 및 유형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 파. 가호 내지 타호에 규정된 현지내 보전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
제9조 현지의 보전
 ...

각 계약당사자는 주로 현지내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가. 가급적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원산국안에서 그 구성요소의 현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 나. 가급적 유전자원의 원산국안에서 식물·동물 및 미생물의 현지의 보전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을 설립·유지한다.

- (i) Endeavour to provide the conditions needed for compatibility between present uses and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 (j) Subject to its national legislation, respect, preserve and maintain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promote their wider application with the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 holders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and encourage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 (k) Develop or maintain necessary legislation and/or other regulatory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hreatened species and populations;
- (l) Where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biological diversity has been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7, regulate or manage the relevant processes and categories of activities; and
- (m) Cooperate in providing financial and other support for in-situ conservation outlined in subparagraphs (a) to (l) above, particularly to developing countries.

...
Article 9 Ex-situ Conservation
 ...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and predominantly for the purpose of complementing in-situ measures:

- (a) Adopt measures for the ex-situ conservation of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preferably in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components;
- (b) Establish and maintain facilities for ex-situ conservation of and research on plants, animals and micro-organisms, preferably in the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 다. 위협받는 종의 회복 및 복원을 위한 조치와 적절한 조건하에서 이들을 자연서식지로 재반입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 라. 다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특별한 현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태계와 종의 현지내 개체군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현지의 보전목적을 위하여 자연서식지로부터의 생물자원의 수집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 마. 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현지의 보전을 위한 재정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지의 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데 있어서 협력한다.

...
제10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각 계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조치를 취한다.

- 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려를 국가정책결정에 통합한다.
- 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한다.
- 다. 보전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요건에 부합되는 전통적인 문화적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습적인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한다.
- 라. 생물다양성이 감소된 퇴화지역에서의 복원활동을 개발·시행하도록 현지주민을 지원한다.
- 마.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정부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 (c) Adopt measures for the recovery and rehabilitation of threatened species and for their re-introduction into their natural habitats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 (d) Regulate and manage colle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from natural habitats for ex-situ conservation purposes so as not to threaten ecosystems and in-situ populations of species, except where special temporary ex-situ measures are required under subparagraph (c) above; and
- (e) Cooperate in providing financial and other support for ex-situ conservation outlined in subparagraphs (a) to (d) above and i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ex-situ conservation fac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
Article 10 Sustainable Use of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 (a) Integrate consideration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into national decision-making;
- (b) Adopt measures relating to th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to avoid or minimize adverse impacts on biological diversity;
- (c) Protect and encourage customary use of biologic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raditional cultural practices that are compatible with conservation or sustainable use requirements;
- (d) Support local populations to develop and implement remedial action in degraded areas where biological diversity has been reduced; and
- (e)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its governmental authorities and its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methods for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
제11조 유인 조치

각 계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인요소로 작용할 경제적·사회적으로 건전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 연구 및 훈련

각 계약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확인·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과학·기술교육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유지하며,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 나.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자문보조기관의 권고의 결과로 채택된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장려한다.
- 다. 제16조·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생물다양성 연구에서의 과학적 발전의 이용을 촉진·협력한다.

...
제13조 공공교육 및 홍보

각 계약당사자는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증진 시키며,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이해를 전파시키고 이러한 주제사항들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촉진·장려한다.

...
Article 11 Incentive Measure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adopt economically and socially sound measures that act as incentiv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
Article 12 Research and Training

The Contracting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shall:

- (a) Establish and maintain programmes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 measures for the identificati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components and provide support for such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 (b) Promote and encourage research which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inter alia, in accordance with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aken in consequence of recommendations of 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 (c) In keeping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20, promote and cooperate in the use of scientific advances in biological diversity research in developing method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
Article 13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 (a) Promote and encourag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and the measures required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its propagation through media, and the inclusion of these topics in educational programmes; and

-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적절히 협력한다.

제14조 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1. 각 계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조치를 취한다.
 - 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도입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절차에 공공의 참여를 허용한다.
 - 나.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환경에 대한 효과가 정당히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도입한다.
 - 다. 적절히 양자·지역 또는 다자간 약정의 체결을 장려함으로써 상호주의 기초위에서 다른 나라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기나라의 관할권 또는 통제아래 있는 활동에 관한 통지·정보교환 및 협의를 촉진한다.
 - 라. 자기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아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피해로서 다른 나라의 관할지역안 또는 자신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긴박하고 중대한 위험 또는 피해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게 즉시 그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 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마. 자연발생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될 활동 또는 사건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국가조치를 증진하며, 그러한 국가노력을 보완하고,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합의하는 경우, 공동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 (b)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oth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developing educational and public awareness programmes, with respect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4 Impact Assessment and Minimizing Adverse Impacts

1. Each Contracting Party,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shall:
 - (a) Introduce appropriate procedures requi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its proposed projects that are likely to have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biological diversity with a view to avoiding or minimizing such effects and, where appropriate, allow for public participation in such procedures;
 - (b) Introduc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ensure that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its programmes and policies that are likely to hav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n biological diversity are duly taken into account;
 - (c) Promot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notification,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n activi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which are likely to significantly affect adversely the biological diversity of other States or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by encouraging the conclusion of bilateral, region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as appropriate;
 - (d) In the case of imminent or grave danger or damage, originating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to biological diversity within the area under jurisdiction of other States or in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notify immediately the potentially affected States of such danger or damage, as well as initiate action to prevent or minimize such danger or damage; and
 - (e) Promote national arrangements for emergency responses to activities or events, whether caused naturally or otherwise, which present a grave and imminent danger to biological diversity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upplement such national efforts and, where appropriate and agreed by the States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concerned, to establish joint contingency plans.

2. 당사자총회는 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의 피해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문제를 검토한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내문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 국가가 자신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
2.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계약당사자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이 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계약당사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계약당사자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4.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그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과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 자원을 제공하는 계약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당사자의 사전통보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6.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그 계약당사자의 완전한 참여와 가능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영토 안에서 개발·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examine, on the basis of studies to be carried out, the issue of liability and redress, including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 to biological diversity, except where such liability is a purely internal matter.

Article 15 Access to Genetic Resources

1. Recognizing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over their natural resources, the authority to determin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rests with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is 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deavour to create conditions to facilit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environmentally sound uses by other Contracting Parties and not to impose restrictions tha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3.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genetic resources being provided by a Contracting Party, a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nd Articles 16 and 19, are only those that are provided by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countries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by the Parties that have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4. Access, where granted, shall be on mutually agreed terms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5. Access to genetic resources shall be subject to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at Party.
6.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deavour to develop and carry out scientific research based on genetic resources provided by other Contracting Parties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and where possible in, such Contracting Parties.

7. 각 계약당사자는 연구·개발의 결과와 유전자원의 상업적 및 그밖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정체계를 통하여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공유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른다.

...
제16조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

1. 각 계약당사자는 기술에는 생명공학이 포함되며 계약당사자간의 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이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거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기술에 대한 다른 계약당사자의 접근 및 이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제공 및/또는 촉진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접근 및 이전은 상호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재정체계에 따라 제공 및/또는 촉진된다.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소유권의 적용을 받는 기술의 경우, 지적소유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조건으로 이러한 기술접근 및 이전이 제공된다. 이 항은 제3항·제4항 및 제5항에 합치되게 적용된다.
3. 각 계약당사자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계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계약당사자가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통하여 그리고 국제법에 따르고 제4항 및 제5항에 합치되게 특허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하여 그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4. 각 계약당사자는 민간부문이 개발도상국의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이익을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기술에의 접근·공동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된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7.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9 and, where necessary, through the financial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s 20 and 21 with the aim of sharing in a fair and equitable way the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and other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with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
Article 16 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

1. Each Contracting Party, recognizing that technology includes biotechnology, and that both 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among Contracting Parties are essential elements f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undertake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provide and/or facilitate access for and transfer to other Contracting Parties of technologies that are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or mak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do not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environment.
2. 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to developing countries shall be provided and/or facilitated under fair and most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where mutually agreed, and, wher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s 20 and 21. In the case of technology subject to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ccess and transfer shall be provided on terms which recognize and are consistent with th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shall be consistent with paragraphs 3, 4 and 5 below.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that Contracting Parties, in particular those that are developing countries, which provide genetic resources are provided access to and transfer of technology which makes use of those resources, on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technology protected by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re necessary, throug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0 and 21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consistent with paragraphs 4 and 5 below.
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that the private sector facilitates access to, joint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for the benefit of both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n this regard shall abide by the obligations included in paragraphs 1, 2 and 3 above.

5. 계약당사자는 특허권 및 그 밖의 지적소유권이 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가 이 협약의 목적을 지원하고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협력한다.

...
제17조 정보교환
...

1. 계약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2.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기술적·과학적 및 사회·경제적 연구결과의 교환뿐만 아니라 훈련 및 조사프로그램·전문지식·현지의 전통 지식에 관한 정보 그 자체 그리고 이들이 제16조 제1항에 언급된 기술과 연계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또한 정보교환은 타당한 경우 정보의 회송을 포함한다.

...
제18조 기술·과학협력
...

1. 계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국제기관 및 국내기관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과학협력을 증진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의 개발 및 이행을 통하여 다른 계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계약당사자와 기술·과학협력을 증진한다. 이러한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 인적자원의 개발 및 제도구축을 통한 국가능력의 개발과 강화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3.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기술·과학협력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하여 정보공유체계의 구축방안을 결정한다.

5.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ing that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cooperate in this regard subject to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ensure that such rights are supportive of and do not run counter to its objectives.

...
Article 17 Exchange of Information
...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from all publicly available sources,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2. Such exchange of information shall include exchange of results of technical, scientific and socio-economic research, as well as information on training and surveying programmes, specialized knowledge, indigenou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 such and in combination with the technologies referred to in Article 16, paragraph 1. It shall also, where feasible, include repatriation of information.

...
Article 18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international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where necessary,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and national institution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mot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with other Contracting Part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in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inter alia,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In promoting such cooperation,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capabilities, by mean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institution building.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rst meeting, shall determine how to establish a clearing-house mechanism to promote and facilitat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4. 계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국내입법과 정책에 따라 현지 기술 및 전통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장려하고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인력양성과 전문가의 교류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5. 계약당사자는 상호협의의 조건하에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프로그램 및 합작투자의 수립을 증진한다.

제19조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1. 각 계약당사자는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그러한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계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초위에서 그러한 당사자의 우선적인 접근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협의된 조건에 따른다.
3.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기인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전·취급 및 사용의 분야에서 특히 사전통보승인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는 의정서의 필요성과 그 양식을 검토한다.
4. 각 계약당사자는 직접 또는 제3항에 언급된 생물체를 제공하는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요구하여 그 생물체를 도입하는 계약당사자가 생물체를 다루는데 필요로 하는 사용 및 안전규정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체를 도입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관계되는 특정 생물체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encourage and develop methods of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technologies, including indigenous and traditional technologies, in pursuance of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For this purpos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lso promote cooperation in the training of personnel and exchange of experts.
5.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ubject to mutual agreement,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joint research programmes and joint venture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evant to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9. Handling of Biotechnology and Distribution of its Benefit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provide for the effective participation in biotechnological research activities by those Contracting Part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which provide the genetic resources for such research, and where feasible in such Contracting Partie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ll practicable measures to promote and advance priority access on a fair and equitable basis by Contracting Part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to the results and benefits arising from biotechnologies based upon genetic resources provided by those Contracting Parties. Such access shall be on mutually agreed terms.
3. The Parties shall consider the need for and modalities of a protocol setting out appropriate procedures, including, in particular, advance informed agreement, in the field of the safe transfer, handling and use of any living modified organism resulting from biotechnology that may have adverse effect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directly or by requiring any natural or legal person under its jurisdiction providing the organism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bove, provide any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 use and safety regulations required by that Contracting Party in handling such organisms, as well as any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potential adverse impact of the specific organisms concerned to the Contracting Party into which those organisms are to be introduced.

제20조 자원

1. 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국가계획·우선순위 및 사업계획에 따라 이 협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국내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정적 지원 및 유인조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2. 선진국인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따르는 합의된 만큼의 총 부가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부가비용은 당사자총회가 정하는 정책·전략·사업 우선순위·적격성 기준 및 예시적 부가비용 목록에 따라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와 제21조에 언급된 제도적 조직간에 합의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그 밖의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선진국인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선진국인 당사자와 선진국인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그 밖의 당사자의 목록을 작성한다. 당사자총회는 이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목록을 수정한다. 또한 그 밖의 국가 및 자금원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여금은 장려된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은 기금의 적정성·예측성 및 유입의 적기성에 대한 필요성과 목록에 포함된 기여당사자간의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3. 선진국인 당사자는 또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재원을 양자적·지역적 그리고 그 밖의 다자적 경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고, 개도국인 당사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4.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협약에 따른 공약의 효과적인 이행정도는 선진국인 당사자가 자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이 협약상의 공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할 지에 달려 있으며, 경제·사회개발과 빈곤의 퇴치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제1차적이며 최우선 순위임을 충분히 고려한다.
5. 당사자는 자원제공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조치에서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6. 계약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군소도서국가 안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 생물다양성의 분포 및 생물다양성의 소재지에서 기인하는 특별한 여건을 고려한다.

Article 20. Financial Resources

1. Each Contracting Party undertakes to provide, in accordance with its capabilities, financial support and incentives in respect of those national activities which are intend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plans, priorities and programmes.
2.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provide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to enabl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o meet the agreed full incremental costs to them of implementing measures which fulfil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and to benefit from its provisions and which costs are agreed between a developing country Party an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referred to in Article 21, in accordance with policy, strategy, programme priorities and eligibility criteria and an indicative list of incremental costs establish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ther Parties, including countries undergo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may voluntarily assume the obligations of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t its first meeting establish a list of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other Parties which voluntarily assume the obligations of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periodically review and if necessary amend the list. Contributions from other countries and sources on a voluntary basis would also be encouraged.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ommitment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adequacy, predictability and timely flow of funds and the importance of burden-sharing among the contributing Parties included in the list.
3.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may also provide, 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avail themselves of, financial resourc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rough bilateral, regional and other multilateral channels.
4. The extent to which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ll effectively implement their commitments under this Convention will depend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by developed country Parties of their commitments under this Convention related to financial resources and transfer of technology and wi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fact tha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eradication of poverty are the first and overriding priorities of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5. The Parties shall take full account of the specific needs and special situation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ir actions with regard to funding and transfer of technology.
6.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al conditions resulting from the dependence on,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within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small island States.

7. 건조·반건조지대, 해안지대 및 산악지대 등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된다.

...
제21조 재정체제
...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에 대한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제가 설치되며, 이 체제의 필수요소를 이 조에 정한다. 이 체계는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당사자총회에 책임을 진다. 이 체계의 운영은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제도적 조직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총회는 이러한 재원에의 접근 및 재원의 이용과 관련된 정책·전략·사업우선순위 및 적격성 기준을 결정한다. 기여금은 당사자총회에서 주기적으로 정하게 될 소요재원의 규모에 따라 제20조에 언급된 기금의 예측 가능성·적정성 및 적기공급 등의 필요와 제20조제2항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된 기여 당사자간의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자발적 기여금은 또한 선진국인 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 및 자금원에 의하여 조성된다. 이 체계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 안에서 운영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정책·전략 및 사업계획 우선 순위뿐만 아니라 재원의 이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및 평가를 포함하여 재원에의 접근 및 이용의 적격성을 위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을 결정한다. 당사자총회는 재정체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제도적 조직과 협의 후 제1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한다.
3.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는 정기적으로 제2항에 언급된 기준 및 지침을 포함하여 이 조에 의하여 설립된 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한다. 이 검토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이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계약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정체제의 강화를 고려한다.

7. Consideration shall also be given to the special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ose that are most environmentally vulnerable, such as those with arid and semi- arid zones, coastal and mountainous areas.

...
Article 21. Financial Mechanism
...

1. There shall be a mechanism for the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purposes of this Convention on a grant or concessional basis the essential elements of which are described in this Article. The mechanism shall function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and be accountabl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for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operations of the mechanism shall be carried out by such institutional structure as may be decided up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first meeting. For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termine the policy, strategy, programme priorities and eligibility criteria relating to the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The contributions shall be such as to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predictability, adequacy and timely flow of funds referred to in Article 20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resources needed to be decided periodically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the importance of burden-sharing among the contributing Parties included in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0, paragraph 2. Voluntary contributions may also be made b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by other countries and sources. The mechanism shall operate within a democratic and transparent system of governance.
2. Pursuant to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t its first meeting determine the policy, strategy and programme priorities, as well as detailed criteria and guidelines for eligibility for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n a regular basis of such utilizatio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cide on the arrangements to give effect to paragraph 1 abov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institutional structure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mechanism.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mechanism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including the criteria and guidelin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not less than two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thereafter on a regular basis. Based on such review, it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echanism if necessary.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sider strengthening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제22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규정은 기존의 국제협정에서 유래하는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계약당사자는 해양환경에 대하여 해양법에 따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되게 이 협약을 이행한다.

제23조 당사자 총회

1. 이에 따라 당사자총회를 설치한다.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는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이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소집한다. 그 후로는 당사자총회 정기회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일정한 간격으로 개최된다.
2. 당사자총회 특별회의는 당사자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 다만, 이러한 서면요청은 사무국이 그 요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당사자총회는 당사자총회의 의사규칙 및 당사자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의사규칙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경비를 규율하는 재정규칙을 컨센서스로 합의·채택한다. 당사자총회는 각 정기회의에서 차기 정기회의까지 회계기간에 대한 예산을 채택한다.
4.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 가. 제26조에 따라 제출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형식 및 간격을 정하고 이러한 정보와 보조기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Article 22.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1.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Contracting Party deriving from any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 except where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would cause a serious damage or threat to biological diversity.
2. Contracting Parties shall implement this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marine environment consistently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the law of the sea.

Article 23. Conference of the Parties

1. A Conference of the Parties is hereby established.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be convened b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not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reafter, 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be held at regular intervals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at its first meeting.
2. Extra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be held at such other time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Conference, or at the written request of any Party, provided that,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being communicated to them by the Secretariat, it is supported by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by consensus agree upon and adopt rules of procedure for itself and for any subsidiary body it may establish, as well as financial rules governing the funding of the Secretariat. At each ordinary meeting, it shall adopt a budget for the financial period until the next ordinary meeting.
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keep unde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nd, for this purpose, shall:
 - (a) Establish the form and the intervals for transmitting the information to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and consider such information as well as reports submitted by any subsidiary body;

- 나. 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기술·공학적 자문의견을 검토한다.
 - 다.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의정서를 심의·채택한다.
 - 라. 필요한 경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협약 및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채택한다.
 - 마. 의정서 및 그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에게 이 개정의 채택을 권고한다.
 - 바. 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라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를 심의·채택한다.
 - 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히 과학·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 아. 이 협약에 포함된 사항을 다루는 다른 협약들의 집행기구와 적절한 협력방식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통하여 이들 집행기구와 접촉한다.
 - 자. 협약 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시행한다.
5. 국제연합·국제연합 전문기구·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협약의 비당사자인 국가는 당사자 총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나 기관이 당사자총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옵저버의 참가허가 및 회의참석은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른다.

- (b) Review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on biological diversity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 (c) Consider and adopt, as required, protoco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 (d) Consider and adopt,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9 and 30,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and its annexes;
 - (e) Consider amendments to any protocol, as well as to any annexes thereto, and, if so decided, recommend their adoption to the parties to the protocol concerned;
 - (f) Consider and adopt, a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additional annexes to this Convention;
 - (g)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particularly to provide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ce, as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 (h) Contact, through the Secretariat, the executive bodies of conventions dealing with matters covered by this Convention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ppropriate forms of cooperation with them; and
 - (i) Consider and undertake any additional action that may be requir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 the light of experience gained in its operation.
5.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well as any State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be represented as observers at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y other body or agency, whether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qualified in fields relating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which has informed the Secretariat of its wish to be represented as an observer at a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may be admitted unless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present object. The admission and participation of observers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procedur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제24조 사무국

1. 이 협약에 의하여 사무국이 설치되며,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제23조에 규정된 당사자총회 회의를 준비·지원하는 것
 - 나. 의정서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다. 이 협약에 따른 기능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하는 것
 - 라.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하고 특히 사무국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행정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마. 당사자총회가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2. 당사자총회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협약에 따른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표명한 기존의 관련 국제기구 중에서 사무국을 지정한다.

제25조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1. 당사자총회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보조기구에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문의 제공을 위한 보조기구를 이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구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에 개방되며 수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관련 전문 분야의 권한있는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모든 활동상황을 당사자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Article 24. Secretariat

1. A secretariat is hereby established. Its functions shall be:
 - (a) To arrange for and service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provided for in Article 23;
 - (b) To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any protocol;
 - (c) To prepare reports on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under this Convention and present them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d) To coordinate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and, in particular to enter into such administrative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as may be required for the effective discharge of its functions; and
 - (e) To perform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2. At its first ordinary meeting,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designate the secretariat from amongst those existing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signified their willingness to carry out the secretariat functions under this Convention.

Article 25.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1. A subsidiary body for the provis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is hereby established to provid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as appropriate, its other subsidiary bodies with timely advice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his body shall be open to participation by all Parties and shall be multidisciplinary. It shall comprise government representatives competent in the relevant field of expertise. It shall report regularl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all aspects of its work.

2. 당사자총회의 권한 하에 그리고 당사자총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당사자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구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가.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제공한다.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유형별 효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준비한다.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혁신적·효율적·최신의 기술 및 노하우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또는 이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한다.

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연구·개발분야에서의 과학프로그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마. 당사자총회 및 그 보조기구가 제기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및 방법론적 질의에 답한다.

3. 이 기구의 기능·권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총회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제26조 보고

각 계약당사자는 당사자총회가 정한 간격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그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한다.

2. Under the authority of and in accordance with guidelines laid dow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upon its request, this body shall:

(a) Provide scientific and technical assessments of the status of biological diversity;

(b) Prepare scientific and technical assessments of the effects of types of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c) Identify innovative, efficient and state-of-the-art technologies and know-how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advise on the ways and means of promoting development and/or transferring such technologies;

(d) Provide advice on scientific programm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e) Respond to scientific, technical, technological and methodological questions th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its subsidiary bodies may put to the body.

3. The functions, terms of referen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is body may be further elabora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rticle 26. Report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t intervals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presen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ports on measures which it has take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ir effectiveness in meeting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제27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2. 관련 당사자가 교섭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으로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역 경제통합기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의 분쟁 해결방안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강제적인 것으로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 가. 부속서 II의 제1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
 - 나.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4.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절차나 어느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II의 제2부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다.
5. 이 조의 규정은 해당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의정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8조 의정서 채택

1. 계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의정서를 작성·채택하는데 협력한다.
2. 의정서는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채택한다.

Article 27. Settlement of Disputes

1.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concerned shall seek solution by negotiation.
2. If the parties concerned cannot reach agreement by negotiation, they may jointly seek the good offices of, or request mediation by, a third party.
3. Whe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ay declare in writing to the Depository that for a dispute not resol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r paragraph 2 above, it accepts one or both of the following means of dispute settlement as compulsory:
 - (a)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Part 1 of Annex II;
 - (b)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4.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no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bove, accepted the same or any procedure,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conciliation in accordance with Part 2 of Annex II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ny protoco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protocol concerned.

Article 28. Adoption of Protocols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formulation and adoption of protocols to this Convention.
2. Protocols shall be adopted at a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3. 사무국은 제안된 의정서의 문안을 최소한 이러한 회의가 개최되기 6월 이전에 계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29조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

1. 계약당사자는 협약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정서의 개정안은 의정서의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다.
2.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의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 개정안의 문안을 늦어도 개정안이 채택될 회의가 개최되기 6월 이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자에게 참고로 전달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이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해당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하며, 수탁자는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4. 개정안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계약당사자 또는 해당 의정서 당사자의 최소한 3분의 2로부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자간에 발효한다. 그밖의 당사자가 그 이후에 개정안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출석·투표한 당사자”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자를 말한다.

3. The text of any proposed protocol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by the Secretariat at least six months before such a meeting.

Article 29. Amendment of the Convention or Protocols

1.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may be proposed by any Contracting Party. Amendments to any protocol may be proposed by any Party to that protocol.
2.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adopted at a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mendments to any protocol shall be adopted at a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rotocol in question.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except as may otherwise be provided in such protocol,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Parties to the instrument in question by the secretariat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meeting at which it is proposed for adoption. The secretariat shall also communicat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ignatories to this Convention for information.
3.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agreement on any proposed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by consensus.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agreement reached, the amendment shall as a last resort be adopted by a two-third majority vote of the Parties to the instrument in question present and voting at the meeting, and shall be submitted by the Depositary to all Parties for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4.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amendments shall be notified to the Depositary in writing. Amendment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bove shall enter into force among Parties having accepted them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at least two third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or of the Parties to the protocol concerned, except as may otherwise be provided in such protocol. Thereafter the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other Party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at Party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e amendments.
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Parties present and voting” means Parties present and casting an affirmative or negative vote.

...

제30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

1.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그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약 또는 협약의 의정서가 언급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동시에 관련 부속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속서는 절차적·과학적·기술적 및 행정적 사항에 한정한다.
2. 의정서가 부속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의정서 부속서의 제안·채택 및 발효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제2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채택된다.
 - 나.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자신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의정서의 부속서를 승인할 수 없는 당사자는 수탁자로부터 채택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통지를 지체없이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속서는 다호에 따라 그 때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 다. 부속서는 수탁자가 채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의 기한이 만료하는 날 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협약의 모든 당사자 또는 해당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의 제출·채택 및 발효는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의 제출·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4. 추가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과 관련되는 경우, 추가부속서 또는 개정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

Article 30. Adoption and Amendment of Annexes

...

1. The annexes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or of such protocol, as the case may be, and,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to this Convention or its protocols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to any annexes thereto. Such annexes shall be restricted to procedural, scientific,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2.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in any protocol with respect to its annexes, the following procedure shall apply to the proposal,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of additional annexes to this Convention or of annexes to any protocol:
 - (a) Annexes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shall be proposed and adop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9;
 - (b) Any Party that is unable to approve an additional annex to this Convention or an annex to any protocol to which it is Party shall so notify the Depositary, in writing,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of the adoption by the Depositary. The Depositary shall without delay notify all Parties of any such notification received. A Party may at any time withdraw a previous declaration of objection and the annexes shall thereupon enter into force for that Party subject to subparagraph (c) below;
 - (c) On the expiry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communication of the adoption by the Depositary, the annex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Parties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concerned which have not submitted a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above.
3. The proposal,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of amendments to annexes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procedure as for the proposal, adoption and entry into force of annexes to the Convention or annexes to any protocol.
4. If an additional annex or an amendment to an annex is related to an amendment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the additional annex or amendment shall not enter into force until such time as the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r to the protocol concerned enters into force.

제31조 투표권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체약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기구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기구의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32조 협약과 의정서의 관계

1.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이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또는 동시에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당사자도 모든 의정서 당사자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제33조 서명

이 협약은 1992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1992년 6월 15일부터 1993년 6월 4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과 의정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Article 31. Right to Vote

1.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below, each Contracting Party to this Convention or to any protocol shall have one vote.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which ar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or the relevant protocol. Such organizations shall not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if their member States exercise theirs, and vice versa.

Article 32. Relationship between this Convention and Its Protocols

1. A State or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ay not become a Party to a protocol unless it is, or becomes at the same time, a Contracting Party to this Convention.
2. Decisions under any protocol shall be taken only by the Parties to the protocol concerned. Any Contracting Party that has not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a protocol may participate as an observer in any meeting of the parties to that protocol.

Article 33. Signature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Rio de Janeiro by all States and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from 5 June 1992 until 14 June 1992, and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15 June 1992 to 4 June 1993.

Article 34.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1. This Convention and any protocol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and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2. 제1항에 언급된 기구로서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계약당사자인 경우,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기구는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에서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이 기구는 또한 그의 권한범위에 있어서의 관련 변동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35조 가입

1. 이 협약 및 의정서는 협약 또는 동 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가입서에서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그의 권한범위에 있어서의 관련 변동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가입하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된다.

제36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의정서는 그 의정서에 명시된 숫자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Any organiz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which becomes a Contracting Party to this Convention or any protocol without any of its member States being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bound by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 as the case may be. In the case of such organizations, one or more of whose member States is a Contracting Party to this Convention or relevant protocol,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or protocol, as the case may be. In such cases,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rights under the Convention or relevant protocol concurrently.
3. In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the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declar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e Convention or the relevant protocol. These organizations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Article 35. Accession

1. This Convention and any protocol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States and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 concerned is closed for signatur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2. In their instruments of accession, the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shall declar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e Convention or the relevant protocol. These organizations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3. The provisions of Article 34, paragraph 2, shall apply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which accede to this Convention or any protocol.

Article 36.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Any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number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pecified in that protocol, has been deposited.

3.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는 또는 협약에 가입하는 각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은 이러한 계약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4. 의정서는 해당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정서가 제2항에 따라 발효한 후에 그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하거나 또는 그 의정서에 가입하는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계약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협약이 그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중에서 더 늦은 날에 발효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적인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
제37조 유보
...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
제38조 탈퇴
...

1. 계약당사자는 협약이 자신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2년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통지 접수일로부터 1년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 또는 탈퇴 통지서에 그보다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되는 경우에는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3.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당사자는 그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의정서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3. For each Contracting Party which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Convention or accedes thereto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such Contracting Party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4. Any protoco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ch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for a Contracting Party that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at protocol or accedes thereto after its entry into force pursuant to paragraph 2 abov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at Contracting Party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on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at Contracting Party, whichever shall be the later.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abov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member States of such organization.

...
Article 37. Reservations
...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Convention.

...
Article 38. Withdrawals
...

1. At any time after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for a Contracting Party, that Contracting Party may withdraw from the Convention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2. Any such withdrawal shall take place upon expiry of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 or on such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of the withdrawal.
3. Any Contracting Party which withdraws from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also having withdrawn from any protocol to which it is party.

...
제39조 임시 재정조치

유엔개발계획·유엔환경계획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구환경금융은 제21조의 요건에 따라 완전히 개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또는 당사자총회가 제21조에 따라 제도적 조직을 지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21조에 언급된 제도적 조직이 된다.

...
제40조 임시 사무국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사무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24조제2항에 언급된 사무국이 된다.

...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의정서의 수탁자 기능을 수행한다.

...
제42조 정보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보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작성되었다.

...
Article 39. Financial Interim Arrangements

Provided that it has been fully re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1,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shall b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referred to in Article 21 on an interim basis, for the period betwee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r unti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decides which institutional structure will be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
Article 40. Secretariat Interim Arrangements

The secretariat to be provided by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shall be the secretariat referred to in Article 24, paragraph 2, on an interim basis for the period betwee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Article 41. Deposito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ssume the functions of Depository of this Convention and any protocols.

...
Article 42. Authentic Texts

The original of this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Rio de Janeiro on this fifth day of June,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 two.

부속서 I

확인 및 감시

1. 생태계 및 서식지: 고도의 다양성, 특유하거나 위협받는 다수의 종 또는 황무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이동성 종이 필요로 하는 것;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또는 과학적 중요성이 있는 것; 대표적이거나 특유한 것, 또는 주요 진화 또는 그 밖의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
2. 종 및 집단: 위협에 처한 것; 사육종과 재배종의 야생 관련종; 의학적·농업적 또는 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사회적·과학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것; 또는 지표종과 같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것
3. 사회적·과학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게놈 및 유전자

부속서 II

제 1 부 중재

제1조

중재신청당사자는 분쟁당사자가 제27조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함을 사무국에 통지한다. 통지에는 중재의 주제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그 해석 또는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협약 또는 의정서의 조항을 포함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지명되기 전에 분쟁의 주제사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주제사항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이와 같이 접수한 정보를 이 협약 또는 해당 의정서의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Annex I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1. Ecosystems and habitats: containing high diversity, large numbers of endemic or threatened species, or wilderness; required by migratory species; of social, economic, cultural or scientific importance; or, which are representative, unique or associated with key evolutionary or other biological processes;
2. Species and communities which are: threatened; wild relatives of 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 of medicinal, agricultural or other economic value; or social, scientific or cultural importance; or importance for research in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such as indicator species; and
3. Described genomes and genes of social, scientific or economic importance.

Annex II

Part 1 ARBITRATION

Article 1

The claimant party shall notify the secretariat that the parties are referring a dispute to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27. The notification shall state the subject-matter of arbitration and include, in particular,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which are at issue. If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befor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is designate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subject matter. The secretariat shall forward the information thus received to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or to the protocol concerned.

제2조

1. 2개 당사자간 분쟁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된다.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 해당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제3의 중재인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니어야 하며, 일방 분쟁당사자의 영토 안에 일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하며, 당해 분쟁을 중재인 이외의 자격으로 취급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셋 이상이 당사자인 분쟁의 경우,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분쟁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3. 공석은 처음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한다.

제3조

1. 두 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재판정부 의장이 지명되지 아니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2월 이내에 의장을 지명한다.
2. 일방 분쟁당사자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타방 분쟁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시 2월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제4조

중재판정부는 이 협약 및 해당 의정서의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그 판정을 내린다.

제5조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Article 2

1. In disputes between two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sist of three members. Each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an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designate by common agreement the third arbitrator who shall be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he latter shall not be a national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nor have his or her usual place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se parties, nor be employed by any of them, nor have dealt with the case in any other capacity.
2. In disputes between more than two parties,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jointly by agreement.
3. Any vacancy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pr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Article 3

1. If the President of the arbitral tribunal has not been designated within two months of the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t the request of a party, designate the President within a further two-month period.
2. I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does not appoint an arbitrator within two months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 other party may inform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make the designation within a further two-month period.

Article 4

The arbitral tribunal shall render its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y protocols concerned, and international law.

Article 5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otherwise agre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its own rules of procedure.

제6조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수적인 임시 보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업무를 촉진하며, 특히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중재판정부에 모든 관련 문서·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 나.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그들의 증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분쟁당사자와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과정에서 비밀로 접수한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중재판정부가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균등히 분담한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비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적인 비용명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10조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의 주제사항의 법적 성격에 이해 관계가 있는 계약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주제사항으로부터 직접 제기되는 반대청구를 청취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Article 6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recommend essential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Article 7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facilitate the work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in particular, using all means at their disposal, shall:

- (a) Provide it with all relevant documents, information and facilities; and
- (b) Enable it, when necessary, to call witnesses or experts and receive their evidence.

Article 8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are under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any information they receive in confidence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 9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otherwise becaus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costs of the tribunal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equal shares. The tribunal shall keep a record of all its costs, and shall furnish a final statement thereof to the parties.

Article 10

Any Contracting Party that has an interest of a legal nature in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decision in the case, may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with the consent of the tribunal.

Article 11

The tribunal may hear and determine counterclaims arising directly out of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제12조

절차 및 본질적 문제 모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한다.

제13조

일방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아니하면 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궤석하거나 변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재판정의 진행에 장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재판정부는 완전히 구성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5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은 분쟁의 주제사항에 한정하며 그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종판정에는 참가한 중재인의 성명과 최종판정일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은 개별 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최종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상소절차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소를 할 수 없다.

제17조

최종판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논쟁도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해당 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에 판정을 구하기 위하여 회부될 수 있다.

Article 12

Decisions both on procedure and substance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vote of its members.

Article 13

I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does not appear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or fails to defend its case, the other party may request the tribunal to continue the proceedings and to make its award. Absence of a party or a failure of a party to defend its case shall not constitute a bar to the proceedings. Before rendering its final decision, the arbitral tribunal must satisfy itself that the claim is well founded in fact and law.

Article 14

The tribunal shall render its final decision within five months of the date on which it is fully constituted unless it finds it necessary to extend the time-limit for a period which should not exceed five more months.

Article 15

The final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fined to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and shall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It shall contain the names of the members who have participated and the date of the final decision. Any member of the tribunal may attach a separate or dissenting opinion to the final decision.

Article 16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It shall be without appeal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agreed in advance to an appellate procedure.

Article 17

Any controversy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regards the interpretation or manner of implementation of the final decision may be submitted by either party for decision to the arbitral tribunal which rendered it.

제 2 부 조정

제1조

조정위원회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당사자가 각 2인의 조정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분쟁인 경우,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각각 별도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제3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요청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아니할 경우, 설치요청을 행한 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다시 2월 이내에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의 최후의 조정위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다시 2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관정을 내린다. 동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의사절차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며, 분쟁당사자는 그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Part 2 CONCILIATION

Article 1

A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be created upon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commission shal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be composed of five members, two appointed by each Party concerned and a President chosen jointly by those members.

Article 2

In disputes between more than two parties,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shall appoint their members of the commission jointly by agreement. Where two or more parties have separate 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y are of the same interest, they shall appoint their members separately.

Article 3

If any appointments by the parties are not made within two months of the date of the request to create a conciliation commiss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f asked to do so by the party that made the request, make those appointments within a further two-month period.

Article 4

If a President of the conciliation commission has not been chosen within two months of the last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being appointe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f asked to do so by a party, designate a President within a further two-month period.

Article 5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take its decisions by majority vote of its members. It shall,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otherwise agree, determine its own procedure. It shall render a proposal for resolution of the dispute, which the parties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제6조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그 권한 여부를 결정한다.

Article 6

A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 conciliation commission has competence shall be decided by the commission.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I. 총칙

A. 주요 특징

1.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은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j)호, 제10조(c)호,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 규정과 특히 관련된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대한 법률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개발 및 마련, 그리고 ABS에 대한 상호합의조건(MAT)에 근거한 계약 및 기타 약정을 체결할 때 참조할 수 있다.
2. 본 가이드라인의 어떠한 규정도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본 가이드라인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 국내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4. 본 가이드라인의 어떠한 규정도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제공자”,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와 같은 용어의 사용을 포함, 본 가이드라인의 어떠한 규정도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이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 본 가이드라인의 어떠한 규정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원산국으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 본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임의적)이며,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 (a) 자발성(임의성) : 자발성(임의성)을 기초로 하여 이용자 및 제공자 모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I. GENERAL PROVISIONS

A. Key features

1. These Guidelines may serve as inputs when developing and draft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provisions under Articles 8(j), 10(c), 15, 16 and 19; and contracts and other arrangements under mutually agreed term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2. Nothing in these Guidelines shall be construed as chang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 Nothing in these Guidelines is intended to substitute for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4. Nothing in these Guidelines should be interpreted to affect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over their natural resources;
5. Nothing in these Guidelines, including the use of terms such as “provider”, “user”, and “stakeholder”, should be interpreted to assign any rights over genetic resources beyond thos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6. Nothing in these Guidelines should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genetic resources arising out of the mutually agreed terms under which the resources were obtained from the country of origin.
7. The present Guidelines are voluntary and were prepared with a view to ensuring their:
 - (a) Voluntary nature: they are intended to guide both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on a voluntary basis;

- (b) 이용의 편의성 :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적용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단순하게 작성되었다.
- (c) 실용성 : 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항들은 실용적이며 거래비용을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d) 수용성 : 이용자와 제공자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 (e) 보완성 : 동 가이드라인과 여타 국제 협정은 상호보완적이다
- (f) 진화적 접근방식 : 이 가이드라인은 ABS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재검토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될 것이다.
- (g) 유연성 : 광범위한 분야, 이용자, 국가 현황 및 관할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 유연하여야 한다.
- (h) 투명성 : ABS 협정에 대한 협상 및 이행 시 투명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B. 용어의 사용

- 8.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 가이드라인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용어로서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바이오기술, 유전자원 원산국, 유전자원 제공국, 현지 외(ex situ) 보전, 현지 내(in situ) 보전, 유전물질, 유전자원, 현지 내(in situ) 상태를 포함한다.

C. 적용범위

- 9. 생물다양성협약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 그리고 그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및 기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으며, 인간유전자원은 제외한다.

- (b) Ease of use: to maximize their utility and to accommodate a range of applications, the Guidelines are simple;
- (c) Practicality: the elements contained in the guidelines are practical and are aimed at reducing transaction costs;
- (d) Acceptability: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gain the support of users and providers;
- (e) Complementarity: the Guideline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mutually supportive;
- (f) Evolutionary approach: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be reviewed and accordingly revised and improved as experience is gained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 (g) Flexibility: to be useful across a range of sectors, users and national circumstances and jurisdictions, guidelines should be flexible;
- (h) Transparency: they are intended to promote transparency in the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B. Use of terms

- 8. The term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se Guidelines. These include: biological diversity, biological resources, biotechnology,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ex situ conservation, in situ conservation, genetic material, genetic resources, and in situ conditions.

C. Scope

- 9. All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covered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benefit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and other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should be covered by the guidelines, with the exclusion of human genetic resources.

D. 관련 국제제도와의 관계

10. 동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적인 협약 및 기구 활동과 일관되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은 FAO의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Treaty for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 또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활동도 고려해야 한다.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은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기존의 지역적 입법 및 협정을 고려해야 한다.

E. 목적

11. 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
 - (b) 유전자원으로서의 접근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명한 체계를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한다.
 - (c)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를 수립할 때 당사국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 (d) 접근과 이익공유 조치에 이해당사자(이용자와 제공자)의 관행과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e) 특히 개도국, 그 중에서도 최빈국과 군소 도서국들에게 접근과 이익공유 조치에 관한 효과적인 협상과 이행을 위한 역량배양 활동을 제공한다.
 - (f) 물다양성협약의 관련조항의 이행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 (g) 제공당사국, 즉 개발도상국,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그중 특히 이해당사자 및 토착·지역사회의 적절한 기술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전을 촉진한다.

D. Relationship with relevant international regimes

10. The guidelines should be applied in a manner that is coherent and mutually supportive of the work of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itutions. The guidelin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FAO International Treaty for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urthermore, the work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on issues of relevance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application of the guidelines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existing regional legislation and agre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E. Objectives

11. The objectives of the Guidelines are the following:
- (a) To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 (b) To provide Parties and stakeholders with a transparent framework to facilit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nsur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 (c) To provide guidance to Parties in the development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imes;
 - (d) To inform the practices and approaches of stakeholders (users and providers)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 (e) To provide capacity-building to guarantee the effective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especially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 (f) To promote awareness on implemen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g) To promote the adequate and effective transfer of appropriate technology to providing Parties,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stakeholders and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h) 상기 목적 달성에 공헌하기 위해 제공당사국, 즉 개발도상국, 그 중 특히 최빈국, 군소 도서개도국, 경제전환국에게 필요한 자금의 제공을 촉진한다.
- (i) 접근과 이익공유에서 당사국간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체계(CHM)를 강화한다.
- (j)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에 따라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혁신 및 관례의 보호를 인정하는 메커니즘 및 당사국의 접근과 이익공유제도 수립에 기여한다.
- (k)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의 빈곤퇴치에 공헌하고, 식량안보 보장, 보건 및 문화적인 일체성의 실현을 지원한다.
- (l) 지구분류화사업(GTI)에서 명시한 분류학 연구를 방해하지 않고, 제공자는 분류에 수용하기 위한 물질의 취득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렇게 획득한 물질에 관계한 모든 정보를 이용가능토록 해야 한다.

12.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국의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NBSAP)의 일부분을 구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접근 및 이익공유 전략을 작성하는 것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과정에 필요한 단계를 확인하는데 당사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따른 접근과 이익공유의 역할 및 책임

A. 국가연락기관

13. 각 당사국은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국가연락기관을 1개소를 설치하고, 동 정보를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사전통보승인 및 이익공유를 포함한 상호합의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국가책임기관, 관계한 토착·지역사회, 이해당사자에 대해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유전자원의 접근 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h) To promote the provision of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to providing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or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mentioned above;
- (i) To strengthen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s a mechanism for cooperation among Parties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 (j)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by Parties of mechanisms and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imes that recognize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 (k) To contribute to poverty alleviation and be supportive to the realization of human food security, health and cultural integrity,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 (l) Taxonomic research, as specified in the Global Taxonomy Initiative, should not be prevented, and providers should facilitate acquisition of material for systematic use and users should make available all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specimens thus obtained.

12.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assist Parties in developing an overall access and benefit-sharing strategy, which may be part of their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and in identifying the steps involved in the process of obtai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benefits.

II.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 National focal point

13. Each Party should designate one national focal point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The national focal point should inform applicant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on procedures for ac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benefit-sharing, and on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relevan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B. 국가책임기관

14. 국가책임기관이 설립된 경우에는 적용하는 국내법의 법률, 행정 및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의 승인에 책임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관해 조언하는 책임을 가질 수 있다.

- (a) 협상 프로세스
- (b) 사전통보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상호통보승인에 이르는 요건
- (c) 접근과 이익공유 계약의 모니터링 및 평가
- (d) 접근과 이익공유 계약의 이행 및 시행
- (e) 신청 처리 및 계약의 승인
- (f) 접근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 (g) 접근과 이익공유 프로세스에 적절한 다양한 단계에 대한 개별 이해당사자, 특히 토착·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메커니즘
- (h) 결정방법과 절차가 관계된 토착·지역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행하려는 목적을 추진하는 한편, 토착·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메커니즘

15. 사전통보승인을 부여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책임기관은 권한을 적절하게 기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B. Competent national authority(ies)

14.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where they are established, may,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be responsible for granting access and be responsible for advising on:

- (a) The negotiating process;
- (b)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entering into mutually agreed terms;
- (c)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s;
- (d) Implementation/enforcement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s;
- (e) Processing of applications and approval of agreements;
- (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accessed;
- (g)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different stakeholders, as appropriate for the different steps in the proces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articula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h)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while promoting the objective of having decisions and processes available in a language understandable to relevan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15.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ies) that have the legal power to grant prior informed consent may delegate this power to other entities, as appropriate.

C. 책임

16. 당사국과 이해당사자가 이용자·제공자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행해야 할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유전자원의 원산국인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사국은 :

(i)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국의 정책, 행정 및 법적 조치에 대한 제검토를 장려한다.

(ii) 생물다양성협약의 정보교환체계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접근신청에 관한 보고를 장려한다.

(iii) 유전자원의 상업화 및 기타 이용이 유전자원의 전통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iv) 각국은 자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방법으로 완수하도록 한다.

(v) 모든 이해당사자가 접근활동 시 환경상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다.

(vi) 관련 토착·지역사회와 관련 이해당사자 특히 토착·지역사회가 해당국가의 결정 사항을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

(vii) 협상에서 토착·지역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능력배양 조치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C. Responsibilities

16. Recognizing that Parties and stakeholders may be both users and providers, the following balanced list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provides key elements to be acted upon:

(a) Contracting Parties which are countries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or other Parties which have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hould:

(i) Be encouraged to review their policy,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they are fully complying with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ii) Be encouraged to report on access applications through the clearing-house mechanism and other reporting channels of the Convention;

(iii) Seek to ensure that the commercialization and any other use of genetic resources should not prevent traditional use of genetic resources;

(iv) Ensure that they fulfi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a clear, objective and transparent manner;

(v) Ensure that all stakeholders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 access activities;

(vi) Establish mechanisms to ensure that their decisions are made available to relevan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particularl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vii) Support measures, as appropriate, to enhanc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apacity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fully at negotiations;

(b) 상호합의조건의 이행에 있어 이용자는 :

- (i)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5항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전에 동의 취득을 모색해야 한다.
- (ii) 토착·지역사회의 관습, 전통, 가치관 및 관행을 존중한다.
- (iii) 토착·지역사회의 정보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 (iv) 유전자원의 취득 조건과 부합하는 일관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v) 유전자원의 취득 목적 외 이용은 새로운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이 부여된 후에 수행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 (vi) 유전자원에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사전통보승인의 증거서류와 유전자원 원산지 및 이용과 그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정보를 보관한다.
- (vii) 가능한 제공국 내에서 그리고 제공국의 참여한 가운데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viii) 유전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취득한 물질에 관한 모든 제반 조건을 준수한다. 사전통보승인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취득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로의 제공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의 분류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ix) 생물다양성협약 제16조에 따라, 토착·지역사회, 이해당사자와 설정한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을 포함, 유전자원의 상업적 또는 기타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고 평등하게 공유해야 한다.

(b) In the implementation of mutually agreed terms, users should:

- (i) Seek informed consent prior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conformity with Article 15,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 (ii) Respect customs, traditions, values and customary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iii)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from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iv) Only use genetic resources for purposes consistent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ere acquired;
- (v) Ensure that uses of genetic resources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for which they were acquired, only take place after new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are given;
- (vi) Maintain all relevant data regarding the genetic resources, especially documentary evidence of the prior informed consent and information concerning the origin and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benefits arising from such use;
- (vii) As much as possible endeavour to carry out their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in,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oviding country;
- (viii) When supplying genetic resources to third parties, honour any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acquired material. They should provide this third party with relevant data on their acquisition, includ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conditions of use and record and maintain data on their supply to third partie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mutually agreed terms to facilitate taxonomic research for non-commercial purposes;
- (ix) Ensure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including technology transfer to providing countries,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rising from the commercialization or other use of genetic resources, in conformity with the mutually agreed terms they established with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r stakeholders involved;

- (c)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i) 유전자원 및/또는 전통지식의 제공은 제공자가 그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 (ii) 유전자원 접근에 관해 자의적인 제약을 부과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 (d) 유전자원 이용자를 관할 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사전통보 승인 의무준수, 그리고 접근을 인정하는 상호합의조건 의무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 행정, 또는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국가들은 아래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i) 잠재적 이용자에 대해 유전자원의 접근에 관한 의무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
 - (ii) 지적재산권 적용에 유전자원 원산지,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의 출처공개를 장려하는 조치
 - (iii) 유전자원의 제공자가 있는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 없이 취득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방지목적의 조치
 - (iv) 접근과 이익공유 합의에 위반하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국간의 협력
 - (v)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의 자발적(임의적) 인증제도
 - (vi)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억제하는 조치
 - (vii) 이용자가 위 16(b) 규정 준수를 장려하는 기타 조치

- (c) Providers should:
 - (i) Only supply genetic resources and/or traditional knowledge when they are entitled to do so;
 - (ii) Strive to avoid imposition of arbitrary restriction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 (d) Contracting Parties with users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ir jurisdiction should take appropriate legal,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support compli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and mutually agreed terms on which access was granted. These countries could consider, inter alia, the following measures:
 - (i) Mechanisms to provide information to potential users on their obligations regard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 (ii) Measures to encourage the disclosure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of the origin of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ii)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obtained without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 (iv) Cooper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o address alleged infringement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s;
 - (v) 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s for institutions abiding by rul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 (vi) Measures discouraging unfair trade practices;
 - (vii) Other measures that encourage users to comply with provisions under subparagraph 16(b) above.

III. 이해당사자의 참여

17.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접근과 이익공유 조치의 적절한 수립 및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이해당사자 및 관심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적절한 참여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다.
18. 다음을 포함한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와 협의하고 견해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 (a) 접근 결정, 상호합의조건의 협상 및 시행, 이익공유 시
 - (b)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전략, 정책 또는 제도 마련 시
19. 토착·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협력 위원회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적절한 협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0.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다음을 통해 촉진해야 한다.
 - (a) 이해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특히 과학적 및 법률적 조언에 관한 정보를 제공
 - (b) 상호합의조건 및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접근과 이익공유 조치의 다양한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을 제공
21. 접근과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가 상호합의조건을 협상할 때에 중개자 또는 추진자의 지지를 모색할 수 있다.

III.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17. Involvement of relevant stakeholders is essential to ensure the adequat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However, due to the diversity of stakeholders and their diverging interests, their appropriate involvement can only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18. Relevant stakeholders should be consulted and their view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each step of the process, including:
 - (a) When determining access, negotiating and implementing mutually agreed terms, and in the sharing of benefits;
 - (b)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strategy, policies or regim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19. To facilitate the involvement of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ppropriate consultative arrangements, such as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s, comprising relevant stakeholder representatives, should be made.
20. The involvement of relevant stakeholders should be promoted by:
 - (a) Providing information, especially regarding scientific and legal advice,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participate effectively;
 - (b) Providing support for capacity-building, in order for them to be actively engaged in various stage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such a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utually agreed term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21.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may wish to seek the support of a mediator or facilitator when negotiating mutually agreed terms.

IV. 접근과 이익공유 프로세스

A. 전체 전략

22. 접근과 이익공유 시스템은 그 국가 또는 지역수준에서 접근과 이익공유 전체전략에 기반 해야 한다. 이 접근과 이익공유 전략은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생물다양성국가전략 및 이행계획의 일부로 할 수 있으며, 공평한 이익공유를 촉진시켜야 한다.

B. 단계의 명확화

23.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획득 프로세스에 관련된 단계들은 접근 사전활동,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상업화, 그리고 이익공유를 포함한 기타 활동이 있다.

C. 사전통보승인

24. 각국이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은 기타 당사국에 의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촉진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5항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은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당사국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이런 배경 하에 가이드라인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5항에 따라서 사전통보승인 체계 구축에 관해 당사국들을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진다.

1. 사전통보승인 시스템의 기본원칙

26. 사전통보승인 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법적 확실성 및 명확성

IV. STEPS IN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CESS

A. Overall strategy

22.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s should be based on an overall access and benefit-sharing strategy at the country or regional level. This access and benefit-sharing strategy should aim at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may be part of a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and promote th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B. Identification of steps

23. The steps involved in the process of obtai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may include activities prior to ac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conducted on the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heir commercialization and other uses, including benefit-sharing.

C. Prior informed consent

24. As provided for in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hich recogniz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over their natural resources, each Contracting Party to the Convention shall endeavour to create conditions to facilit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environmentally sound uses by other Contracting Parti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such u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ccess to genetic resources shall be subject to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at Party.
25. Against this background,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assist Parties i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prior informed cons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 5, of the Convention.

1. Basic principles of a prior informed consent system

26. The basic principles of a prior informed consent system should include:

(a) Legal certainty and clarity;

- (b) 유전자원의 접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 (c) 유전자원의 접근 제한은 투명성이 있고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협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d) 제공국의 국가 책임기관의 동의. 상황에 적합한 경우 및 국내법에 따라 토착·지역 사회 등의 관련 이해당사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2. 사전통보승인 시스템의 요소

27. 사전통보승인시스템의 요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사전통보승인 증거를 수여 또는 제공하는 국가 책임기관
- (b) 시기 및 기한
- (c) 이용목적의 특정
- (d) 사전통보승인을 얻는 절차
- (e)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메커니즘
- (e) 프로세스

사전통보승인을 부여하는 국가 책임기관

28. 현지내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한 사전통보승인은 해당 당사국이 별도 결정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그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 (b) Access to genetic resources should be facilitated at minimum cost;
- (c) Restriction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should be transparent, based on legal grounds, and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 (d) Consent of the relevant competent national authority(ies) in the provider country. The consent of relevant stakeholders, such a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and subject to domestic law, should also be obtained.

2. Elements of a prior informed consent system

27. Elements of a prior informed consent system may include:

- (a) Competent authority(ies) granting or providing for evidence of prior informed consent;
- (b) Timing and deadlines;
- (c) Specification of use;
- (d)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 (e) Mechanism for consult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 (f) Process.

Competent authority(ies) granting prior informed consent

28. Prior informed consent for access to in situ genetic resources shall be obtained from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rough i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ies),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at Party.

29. 사전통보승인은 국내법에 따라 여러 수준의 정부들로부터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그를 위해 제공국내에서 사전통보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국가/주/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30. 국내 절차는 간소화와 명료성을 목표로 공동체에서 정부수준까지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쉽게 해야 한다.

31. 접근되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토착·지역사회의 기존 법적 권리, 또는 이러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이 접근되는 경우 토착·지역사회의 기존 법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토착·지역사회의 사전통보승인과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과 참여를 이들의 전통적 관행, 국내 접근정책 및 국내법에 따라 획득해야 한다.

32. 현지의 수집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승인을 국가 책임기관 및/또는 해당 현지의 수집을 관리하는 조직에게 적절히 얻어야 한다.

시기 및 기한

33. 사전통보승인은 접근 요청자 및 승인자 양자 간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적절한 시기에 요청해야 한다. 유전자원의 접근신청에 대한 결정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한다.

이용목적의 특정

34. 사전통보승인은 승인이 부여된 특정 이용에 근거해야 한다. 사전통보승인은 초기에 특정한 이용에 대해 부여하지만, 제3자로의 양도를 포함하는 이용의 변경은 새로운 사전 통보승인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허가된 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 변경 또는 예상되지 않는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지구 분류화사업(GTI)에 따라 지정된 분류학 및 계통적 연구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5. 사전통보승인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관한 요건과 연계된다.

29.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prior informed consent may be required from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national/provincial/local) in the provider country should therefore be specified.

30. National procedures should facilitate the involvement of all relevant stakeholders from the community to the government level, aiming at simplicity and clarity.

31. Respecting established legal right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ssociated with the genetic resources being accessed or wher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these genetic resources is being accessed,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e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should b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traditional practices, national access policies and subject to domestic laws.

32. For ex situ collections, prior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from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ies) and/or the body governing the ex situ collection concerned as appropriate.

Timing and deadlines

33. Prior informed consent is to be sought adequately in advance to be meaningful both for those seeking and for those granting access. Decisions on application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should also be take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Specification of use

34. Prior informed consent should be based on the specific uses for which consent has been granted. While prior informed consent may be granted initially for specific use(s), any change of use including transfer to third parties may require a new application for prior informed consent. Permitted uses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and further prior informed consent for changes or unforeseen uses should be required. Specific needs of taxonomic and systematic research as specified by the Global Taxonomy Initiativ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35. Prior informed consent is linked to the require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사전통보승인 획득 절차

36. 국가책임기관이 접근 신청에 관한 유전자원 접근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 리스트는 예시이며, 국내 여건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 (a) 신청자/수집자의 법적 자격 및 소속, 신청자가 기관인 경우에는 담당자
- (b) 접근을 요청하는 유전자원의 종류와 양
- (c) 활동 개시일 및 기간
- (d) 지리적 탐사 범위
- (e) 접근을 부여하는 대상의 상대적인 비용 및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접근활동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
- (f) 의도한 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예 : 분류학, 수집, 연구, 상업화)
- (g)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장소의 지정
- (h)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i)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하는 지역기관의 지정
- (j) 참여 가능성이 있는 제3자
- (k) 수집, 연구 목적 및 예상 성과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36. An application for access could requir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order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ccess to a genetic resource should be granted. This list is indicative and should be adapted to national circumstances:

- (a) Legal entity and affiliation of the applicant and/or collector and contact person when the applicant is an institution;
- (b) Type and quantity of genetic resources to which access is sought;
- (c) Starting date and duration of the activity;
- (d) Geographical prospecting area;
- (e) Evaluation of how the access activity may impact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o determine the relative costs and benefits of granting access;
- (f)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intended use (e.g.: taxonomy, collection, research, commercialization);
- (g) Identification of wher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take place;
- (h) Information on how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to be carried out;
- (i) Identification of local bodies for collabo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 (j) Possible third party involvement;
- (k) Purpose of the collection, research and expected results;

(l) 유전자원의 상업적 또는 기타 이용에서 발생하는 파생물, 제품의 이익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종류/형태

(m) 이익공유 조치의 지정

(n) 예산

(o) 비밀 정보의 취급

37. 유전자원의 접근허가는 이와 관련된 지식의 이용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프로세스

38. 사전통보승인을 통한 유전자원의 접근신청 및 국가책임기관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허가 여부 결정은 문서화해야 한다.

39. 국가책임기관은 허가 또는 면허를 발행, 기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접근을 부여할 수 있다. 모든 허가 또는 면허의 발행은 기록을 위해 적절하게 기입한 신청양식을 기본으로 국내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0. 접근 허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D. 상호합의조건

41.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7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성과 및 상업적 이용, 기타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당사국과 공정하고 형평 하게 공유하기 위해 적절하게 법률, 행정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 그 공유는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 공유를 보증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 마련 시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를 지원해야 한다.

(l) Kinds/types of benefits that could come from obtaining access to the resource, including benefits from derivatives and product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and other utilization of the genetic resource;

(m) Indication of benefit-sharing arrangements;

(n) Budget;

(o) Treatm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37. Permission to access genetic resources does not necessarily imply permission to use associated knowledge and vice versa.

Process

38. Application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hrough prior informed consent and decisions by the competent authority(ies) to gran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or not shall be documented in written form.

39. The competent authority could grant access by issuing a permit or licence or following other appropriate procedures. A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could be used to record the issuance of all permits or licences, on the basis of duly completed application forms.

40. The procedures for obtaining an access permit/licence should be transparent and accessible by any interested party.

D. Mutually agreed terms

4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 7,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 with the aim of sharing in a fair and equitable way the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and other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with the 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Thus, guidelines should assist Parties and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to ensure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1. 상호합의조건의 기본 요건

42. 상호합의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 또는 기본 요건이 고려될 수 있다.

- (a) 법적 확실성 및 명확성
- (b) 거래비용의 최소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음:
 - (i) 사전통보승인 및 계약을 위한 정부와 이해당사자 요건에 대한 인식의 확보 및 증진
 - (ii) 접근 신청, 계약 체결 및 이익공유 보증을 위한 기존 메커니즘에 관한 인식을 증진
 - (iii) 신속한 조치에 따라 반복적인 접근을 수행하는 협정체계를 마련
 - (iv) 유사 자원 및 유사 이용을 위한 표준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 조치를 마련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제안 요소에 관해서는 부속서 I 을 참조)
- (c) 이용자 및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
- (d) 다양한 자원 및 이용에 대한 다양한 계약 약정 및 모델 협정의 수립
- (e) 다양한 이용에는 특히 분류학, 수집, 연구, 상업화를 위한 이용을 포함
- (f) 상호합의조건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상
- (g) 상호합의조건은 서면으로 결정

1. Basic requirements for mutually agreed terms

42. The following principles or basic requirements could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 (a) Legal certainty and clarity;
- (b) Minimization of transaction costs, by, for example:
 - (i) Establishing and promoting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and relevant stakeholders' requirements for prior informed consent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 (ii) Ensuring awareness of existing mechanisms for applying for access, entering into arrangements and ensuring the sharing of benefits;
 - (iii) Developing framework agreements, under which repeat access under expedited arrangements can be made;
 - (iv) Developing standardize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for similar resources and similar uses (see appendix I for suggested elements of such an agreement);
- (c) Inclusion of provisions on user and provider obligations;
- (d) Development of different contractual arrangements for different resources and for different uses and development of model agreements;
- (e) Different uses may include, inter alia, taxonomy, collection, research, commercialization;
- (f) Mutually agreed terms should be negotiated efficiently a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 (g) Mutually agreed terms should be set out in a written agreement.

43. 계약 약정의 지침 항목으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요소들은 상호합의조건에 기본 요건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 (a) 특정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 특히 관계된 토착·지역사회의 윤리적 관심을 배려하기 위해 자원 이용을 규제
- (b) 유전자원 및 관련된 지식의 지속적인 관습적 이용을 확보하는 규정을 마련
- (c)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위한 규정은 공동연구, 취득한 발명을 실행할 의무 및 공동 합의에 따라 시행권을 승인할 의무를 포함
- (d) 기여도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가능성

2. 전형적인 상호합의조건 예시 목록

44. 다음은 전형적인 상호합의조건 예시 목록이다.

- (a) 유전자원의 종류 및 양, 지리적/생태적 활동범위
- (b) 물질 이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제한
- (c) 원산국의 주권적 권리의 인정
- (d) 합의에서 지정한 다양한 분야의 능력배양
- (e) 특별한 상황에서 합의조건(예 : 용도 변경)의 재협상 여부에 관한 조항

43. The following elements could be considered as guiding parameters in contractual agreements. These elements could also be considered as basic requirements for mutually agreed terms:

- (a) Regulating the use of resources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ethical concerns of the particular Parties and stakeholders, in particula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 (b) Making provision to ensure the continued customary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knowledge;
- (c) Provision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 joint research, obligation to implement rights on inventions obtained and to provide licences by common consent;
- (d) The possibility of joint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tribution.

2. Indicative list of typical mutually agreed terms

44. The following provides an indicative list of typical mutually agreed terms:

- (a) Type and quantity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geographical/ecological area of activity;
- (b) Any limitations on the possible use of the material;
- (c) Recognition of the sovereign rights of the country of origin;
- (d) Capacity-building in various areas to be identified in the agreement;
- (e) A clause on wheth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in certain circumstances (e.g. change of use) can be renegotiated;

- (f) 유전자원의 제3자에게 양도 가능여부 및 그 경우 부과되는 조건. 예를 들면, 상업화와 무관한 분류학 및 계통학 연구를 제외하고 제3자가 유사 협정을 체결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 가능한지 여부
- (g)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의 존중, 보존 및 유지 여부, 전통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습적 이용이 보호되고 장려되는지 여부
- (h) 비밀정보의 취급
- (i)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및 기타 이용과 그 파생물 및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규정

3. 이익공유

- 45. 상호합의조건은 공유해야 할 이익의 조건, 의무, 절차, 종류, 시기, 분배 및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상황에 비추어 공정하고 형평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익의 형태

- 46.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의 예는 동 가이드라인의 부속서 II 에 수록되어 있다.

이익의 시기

- 47. 선급금, 마일스톤(milestone) 지급 및 로열티를 포함한 단기, 중기 및 장기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익공유의 일정 계획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추가로 사안별로 단기, 중기 및 장기 이익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f) Whether the genetic resources can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and conditions to be imposed in such cases, e.g. whether or not to pass genetic resources to third parties without ensuring that the third parties enter into similar agreements except for taxonomic and systematic research that is not related to commercialization;
- (g) Whether the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ave been respected, preserved and maintained, and whether the customary use of biologic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raditional practices has been protected and encouraged;
- (h) Treatm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i) Provisions regarding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and other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heir derivatives and products.

3. Benefit-sharing

- 45. Mutually agreed terms could cover the conditions, obligations, procedures, types, timing, distribution and mechanisms of benefits to be shared. These will vary depending on what is regarded as fair and equitabl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Types of benefits

- 46. Examples of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are provided in appendix II to these Guidelines.

Timing of benefits

- 47. Near-term, medium-term and long-term benefits should be considered, including up-front payments, milestone payments and royalties. The time-frame of benefit-sharing should be definitely stipulated. Furthermore, the balance among near-term, medium-term and long-term benefit should be considered on a case-by-case basis.

이익의 공유

48. 사전통보승인 후에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은 자원관리, 과학적 및 상업적 프로세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모든 관계자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후자는 정부, 비정부기구 또는 학술기관 및 토착민, 지역 사회를 포함할 수 있다. 이익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익공유 매커니즘

49. 이익공유의 메커니즘은 이익의 유형, 관련된 국가와 이해당사자들의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이익공유 메커니즘은 이익공유에 관련된 파트너가 결정하고 사례별로 다양하므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50. 이익공유 메커니즘은 신탁기금, 공동 사업 및 특혜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 등의 상업적 결과에서 파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에서의 전면적인 협력도 포함한다.

V. 기타 규정

A. 인센티브

51. 다음의 인센티브 조치는 동 가이드라인 시행에 활용할 수 있는 조치의 예시이다.
- (a) 접근과 이익공유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인센티브의 지정, 완화 및 제거를 검토해야 한다.
 - (b) 이익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이익공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게 적절히 마련된 경제적·규제적 수단의 이용을 검토해야 한다.
 - (c) 접근과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이용자 및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가치측정 방법의 이용을 검토해야 한다.

Distribution of benefits

48. Pursuant to mutually agreed terms established following prior informed consent, benefits should be shared fairly and equitably with all those who have been identified as having contributed to the resource management, scientific and/or commercial process. The latter may include governmental, non-governmental or academic institutions and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Benefits should be directed in such a way as to promot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Mechanisms for benefit-sharing

49. Mechanisms for benefit-sharing may vary depending upon the type of benefits, the specific conditions in the country and the stakeholders involved. The benefit-sharing mechanism should be flexible as it should be determined by the partners involved in benefit-sharing and will vary on a case-by-case basis.
50. Mechanisms for sharing benefits should include full cooperation in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those that derive from commercial products including trust funds, joint ventures and licences with preferential terms.

V. OTHER PROVISIONS

A. Incentives

51. The following incentive measures exemplify measures which could be us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 (a) The identification and mitigation or removal of perverse incentives, that may act as obstacle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access and benefit-sharing, should be considered;
 - (b) The use of well-designed economic and regulatory instrument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should be considered to foster equitable and efficient allocation of benefits;
 - (c) The use of valuation methods should be considered as a tool to inform users and providers involved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d)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시장창출과 이용을 검토해야 한다.

B. 접근과 이익공유 협정의 이행책임

52. 당사국은 접근과 이익공유 조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행 책임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3. 당사국은 이행책임 증진을 위해 다음에 요건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a) 보고서 작성

(b) 정보 공개

54. 개별 수집자 또는 수집자를 대표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적절한 경우에 수집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C. 국내 모니터링 및 보고

55. 접근과 이익공유 조건에 따라 국내 모니터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유전자원 이용에서 접근과 이익공유 조건에 대한 의무준수 여부

(b) 연구개발 프로세스

(c) 제공된 물질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적용

56. 접근과 이익공유 조치의 마련 및 시행에 다양한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특히, 토착·지역사회의 참여는 의무준수 현황의 모니터링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d) The creation and use of markets should be considered as a way of efficiently achieving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B. Accountability in implemen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52. Parties should endeavour to establish mechanisms to promote accountability by all stakeholders involved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53. To promote accountability, Parties may consider establishing requirements regarding:

(a) Reporting; and

(b) Disclosure of information.

54. The individual collector or institution on whose behalf the collector is operating should, where appropriate, b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for the compliance of the collector.

C. National monitoring and reporting

55. Depending on the term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national monitoring may include:

(a) Whether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is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b)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c) Appl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ing to the material supplied.

56. The involvement of relevant stakeholders, in particula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the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rrange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the monitoring of compliance.

D. 검증수단

57. 생물다양성협약의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과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국의 국내법의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임의적)인 검증 메커니즘을 국가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다.
58. 자발적(임의적) 인증제도는 접근과 이익공유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인증할 수 있다.

E. 분쟁해결

59. 상호합의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의무는 제공자와 이용자간에서 발생하므로 동 조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 준거법 및 관행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60. 생물다양성협약 및 유전자원 원산국의 국내법령과 합치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합의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규정에 있는 벌금과 같은 제재 조치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F. 구제조치

61. 당사국은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여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규정을 시행하는 국내법률, 행정 및 정책 조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 Means for verification

57. Voluntary verification mechanisms could be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national legal instruments of the country of origin providing the genetic resources.
58. A system of voluntary certification could serve as a means to verify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Such a system could certify that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ave been complied with.

E. Settlement of disputes

59. As most obligations arising under mutually agreed arrangements will be between providers and users, disputes arising in these arrangements should be 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ual arrang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the applicable law and practices.
60. In cases where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s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national legal instruments of the 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have not been complied with, the use of sanctions could be considered, such as penalty fees set out in contractual agreements.

F. Remedies

61. Parties may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for violations of nation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implement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requirements related to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물질이전계약의 가능한 요소

물질이전계약은 다음의 요소에 관한 문안을 포함할 수 있다.

A. 전문 규정

1. 전문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언급
2.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의 법적 지위
3. 유전자원 제공자의 권한 및/또는 일반 목적 및 적절한 경우에는 유전자원 이용자의 권한 및/또는 일반 목적

B. 접근과 이익공유 규정

1. 물질이전계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의 설명 (부가 정보 포함)
2. 물질이전계약 하에서 허가된 유전자원, 제품 및 파생물(예: 연구, 육종, 상업화)의 용도 (잠재적 이용도 고려)
3. 용도변경에 대한 새로운 사전통보승인 및 물질이전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4. 지적재산권을 적용 여부 및 조건
5. 금전적 및 비금전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포함, 이익공유 조치의 조건

SUGGESTED ELEMENTS FOR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may contain wording on the following elements:

A. Introductory provisions

1. Preambular referenc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Legal status of the provider and user of genetic resources
3. Mandate and/or general objectives of provider and, where appropriate, user of genetic resources

B.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1. Description of genetic resources covered by the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including accompanying information
2. Permitted uses, bearing in mind the potential uses, of the genetic resources, their products or derivatives under the material transfer agreement (e.g. research, breeding, commercialization)
3. Statement that any change of use would require new prior informed consent an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4.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sought and if so under what conditions
5. Terms of benefit-sharing arrangements, including commitment to share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6. 제공된 물질의 동일성 및/또는 품질에 대한 제공자의 보증은 없음

7. 유전자원 및/또는 부가 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 가능여부 및 조건

8. 정의

9. 수집활동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의무

C. 법률 규정

1. 물질이전계약 준수 의무

2. 유효기간

3. 협정의 폐기 통지

4. 협정의 폐기 후에도 일부 조항의 의무가 존속한다는 사실

5. 협정 중 개별 조항의 독립적인 강제력

6. 각 당사자 책임을 제한하는 사건(예: 천재지변, 화재, 홍수 등)

7. 분쟁해결절차

8. 권리 설정 또는 이전

9.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수령한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권에 대한 청구권의 설정, 이전 또는 배제

6. No warranties guaranteed by provider on identity and/or quality of the provided material

7. Whether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ccompanying information may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and if so conditions that should apply

8. Definitions

9. Duty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of collecting activities

C. Legal provisions

1.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material transfer agreement

2. Duration of agreement

3. Notice to terminate the agreement

4. Fact that the obligations in certain clauses survive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5. Independent enforceability of individual clauses in the agreement

6. Events limiting the liability of either party (such as act of God, fire, flood, etc.)

7. Dispute settlement arrangements

8. Assignment or transfer of rights

9. Assignment, transfer or exclusion of the right to claim any property righ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genetic resources received through the material transfer agreement

10. 준거법의 선택

11. 기밀유지 조항

12. 보증(guarantee)

부속서II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1. 금전적 이익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접근요금 또는 수집과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표본 당 요금
- (b) 선급금(up-front) 지급
- (c) 마일스톤(milestone) 지급
- (d) 로얄티 지불
- (e) 상업화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요금
- (f)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불하는 특별요금
- (g) 상호합의된 경우 급여 및 특혜 조항

10. Choice of law

11. Confidentiality clause

12. Guarantee

Appendix II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1. Monetary benefi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 (a) Access fees/fee per sample collected or otherwise acquired;
- (b) Up-front payments;
- (c) Milestone payments;
- (d) Payment of royalties;
- (e) Licence fees in case of commercialization;
- (f) Special fees to be paid to trust funds supporting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 (g) Salaries and preferential terms where mutually agreed;

(h) 연구 자금

(i) 공동 사업

(j)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2.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연구개발성과의 공유

(b) 가능한 경우에는 제공국 내에서 과학적 연구개발프로세스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의 공동 협력 및 공헌

(c) 제품개발에 참여

(d) 교육훈련의 공동 협력 및 공헌

(e) 유전자원의 서식지의 시설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허가

(f) 유전자원 제공자에 대한 양허조항과 특혜조항을 포함한 공정하고 최혜 조건하에서 지식과 기술의 이전, 특히 생명공학을 포함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계된 지식과 기술의 이전

(g) 이용자 개발도상국 당사국 및 경제전환국 당사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원산국 내의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배양. 토착·지역사회의 유전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능력을 촉진

(h) 제도적인 능력배양

(h) Research funding;

(i) Joint ventures;

(j) Joint ownership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Non-monetary benefi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 Sha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b)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in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particularly biotechnological research activities, where possible in the provider country;

(c) Participation in product development;

(d)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e) Admittance to ex situ facilities of genetic resources and to databases;

(f) Transfer to the provider of the genetic resources of knowledge and technology under fair and most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where agreed, in particular,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make use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iotechnology, or that are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g)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technology transfer to user developing country Parties and to Parties that are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country of origin that provides genetic resources. Also to facilitate abiliti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ir genetic resources;

(h) Institutional capacity-building;

- (i) 접근 규제 행정관리와 집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
- (j) 제공 당사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하면 그 당사국내에서 수행하는 유전자원에 관한 연수
- (k) 생물학적 목록과 분류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과학정보에 대한 접근
- (l) 지역 경제에 대한 공헌
- (m) 제공국 내의 유전자원 이용을 고려한, 보건 및 식량안보 보장과 같은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
- (n) 접근과 이익공유 협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및 향후 공동 활동
- (o) 식량 및 생계 안전보장 측면의 이익
- (p)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
- (q)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 (i)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access regulations;
- (j) Training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providing Parties, and where possible, in such Parties;
- (k) Access to scientific information relevant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biological inventories and taxonomic studies;
- (l)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 (m) Research directed towards priority needs, such as health and food security, taking into account domestic uses of genetic resources in provider countries;
- (n)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at can arise from an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 and subsequent collaborative activities;
- (o)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 (p) Social recognition;
- (q) Joint ownership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 의정서 당사국은,

이하 “협약”이라고 지칭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협약의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고, 그리고 의정서가 협약의 범위 내에서 이 목표의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그리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아울러 협약 제15조를 상기하며,

협약 제16조와 제19조에 따라, 개발도상국 유전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 및 혁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술 이전 및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생물다양성의 관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의 핵심 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빈곤 퇴치, 환경적 지속성에 기여함으로써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잠재적 역할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러한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간의 연계성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법적 확실성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Be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Recalling that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s one of three cor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recognizing that this Protocol pursues the implementation of this objective within the Convention,

Reaffirming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over their natural resources an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calling further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made by technology transfer and cooperation to build research and innovation capacities for adding value to genetic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9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at public awareness of the economic value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is economic value with the custodians of biodiversity are key incentives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cknowledging the potential role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to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poverty eradic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thereby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cknowledging the linkage betwee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legal certainty with respect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아울러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합의조건 협상에 있어서 공평성 및 공정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있어 여성의 핵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며,

협약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조항의 효과적 이행을 증대하기로 결정하며,

월경성 상황, 또는 사전통보승인을 부여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식량 안보, 공중 보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완화 및 이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 생물다양성의 특별한 성격, 차별화된 특징, 그리고 특수한 해법이 요구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전 세계적 식량안보 달성과, 빈곤 완화 및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전자원의 특별한 성격 및 중요성과 더불어,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모든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위원회의 기본적 역할을 인식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2005)을 유념하며, 아울러 공중 보건 준비태세 및 대응 목적으로 인체 병원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념하고,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적 포럼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인정하고,

Furth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equity and fairness in negotiation of mutually agreed term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Recognizing also the vital role that women play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affirming the need for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Determined to further suppor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at an innovative solution is required to addres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occur in transboundary situations or for which it is not possible to grant or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to food security, public health,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mitigation of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cognizing the special nature of agricultural biodiversity,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problems needing distinctive solutions,

Recognizing the interdependence of all countries with regard to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s well as their special nature and importance for achieving food security worldwide a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he context of poverty alleviation and climate change and acknowledging the fundamental role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FAO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n this regard,

Mindful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importance of ensuring access to human pathogens for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purposes,

Acknowledging ongoing work in other international forums relating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협약과 조화롭게 마련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하에 확립된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다자 체제를 상기하며,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국제적 약속문서들이 협약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협약 제8조 차호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평한 공유와 관계된다는 그 관련성을 상기하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간 상호연관성, 토착지역공동체에 있어 양자 간의 불가분적 속성,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이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전통 지식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 또는 소유하는 상황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정당한 보유자를 공동체 내에서 찾아내는 것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권리를 유념하고,

아울러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여 구전, 문서 기록, 또는 기타 형태로 각국에 보유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토착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을 주목하고,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Recalling the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developed in harmony with the Convention,

Recognizing that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ed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Recalling the relevance of Article 8(j) of the Convention as it relate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Not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their inseparable nature f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for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for the sustainable livelihoods of these communities,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circumstances in which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held or owne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Mindful that it is the righ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to identify the rightful holders of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ir communities,

Further recognizing the unique circumstances wher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held in countries, which may be oral, documented or in other forms, reflecting a rich cultural heritage relevant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Noting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Affirming that nothing in this Protocol shall be construed as diminishing or extinguishing the existing right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 목적

...

이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유전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기금조성을 포함한 방법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

제2조 용어 사용

...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용어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당사국 총회”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 나.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의미한다.
- 다. “유전자원 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생명공학기술”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용도로 산출물 또는 공정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의미한다.
- 마.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

...

Article 1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y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y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those resources and to technologies, and by appropriate funding,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

Article 2 Use of Terms

...

The term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his Protocol. In addi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 (a) “Conference of the Parties” means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 (b)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means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genetic and/or biochemical composi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 (d) “Biotechnology”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means any technological application that uses biological systems, living organisms, or derivatives thereof, to make or modify products or processes for specific use;
- (e) “Derivative” means a naturally occurring biochemical compound resulting from the genetic expression or metabolism of biological or genetic resources, even if it does not contain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

제3조 범위

...

이 의정서는 협약 제 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

제4조 국제 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

1. 이 의정서의 조항들은 기존의 국제협약에서 유래하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의정서와 다른 국제 문서들 간의 상하관계 창설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2.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기타 특별 협정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 국제 협정을 개발·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위 협정들은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 문서들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한, 위 국제 문서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하는 유용하고 관련성 있는 작업이나 관행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조항의 이행을 위한 문서이다.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과 부합하고 배치되지 않는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의정서는 특별 문서에 의해 그리고 그 목적상 적용되는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해당 특별 문서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Article 3 Scope

...

This Protocol shall apply to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and to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This Protocol shall also apply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nd to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

Article 4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

1.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Party deriving from any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 except where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would cause a serious damage or threat to biological diversity. This paragraph is not intended to create a hierarchy between this Protocol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2. Nothing in this Protocol shall prevent the Parties from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other specialized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s, provided that they are supportive of and do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3. This Protocol shall be implemented in a mutually supportive manner with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evant to this Protocol.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useful and relevant ongoing work or practices under such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vided that they are supportive of and do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4. This Protocol is the instru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re a specialized international access and benefit-sharing instrument applies that is consistent with, and does not run counter to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this Protocol does not apply for the Party or Parties to the specialized instrument in respect of the specific genetic resource covered by and for the purpose of the specialized instrument.

...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

1. 협약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2.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에 관한 국내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4.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1.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설치를 조건으로,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 접근은, 해당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야 한다.

...

Article 5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paragraphs 3 and 7 of the Convention,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 shall b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the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2.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at are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ed rights of thes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ver these genetic resources, ar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the communities concerned, based on mutually agreed terms.
3. To implement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4. Benefits may include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listed in the Annex.
5. Each Party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in order that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shar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wit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olding such knowledge. Such sharing shall be upon mutually agreed terms.

...

Article 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

1. I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natural resources, and subject to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their utiliz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at Party.

2.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확립된 권리를 가진 경우, 그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 승인 또는 승인과 관여를 취득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상기 제1항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공;

나.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 규칙과 절차의 제공;

다. 사전통보승인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리적 기간 내에 국가책임기관의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 결정의 제공;

마.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응 문서의 발급과 이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통보의 제공;

바.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내입법을 조건으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승인과 참여를 위한 기준 그리고/또는 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 상호합의조건의 요구 및 체결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의 설치. 상호합의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특히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분쟁 해결 조항;

2.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the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s obtained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where they have the established right to grant access to such resources.

3.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each Party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a) Provide for legal certainty, clarity and transparency of their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b) Provide for fair and non-arbitrary rules and procedures on accessing genetic resources;

(c)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apply for prior informed consent;

(d) Provide for a clear and transparent written decision by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n a cost-effective manner a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e) Provide for the issuance at the time of access of a permit or its equivalent as evidence of the decision to grant prior informed consent and of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and notify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ccordingly;

(f) Where applicable, and subject to domestic legislation, set out criteria and/or process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g) Establish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Such terms shall be set out in writing and may include, inter alia:

(i) A dispute settlement clause;

(2)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3)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3자의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그리고

(4) 적용 가능한 경우, 사용 목적의 변경에 관한 조건.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 조건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 고려사항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제정·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가. 연구 의도의 변경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非)상업적 연구를 위한 접근에 대한 간소화된 조치를 포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나.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판단할 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한다.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의 필요성과,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특히 개도국에서) 감당 가능한 치료제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시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면서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

(ii) Terms on benefit-sharing, including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ii) Terms on subsequent third-party use, if any; and

(iv) Terms on changes of intent, where applicable.

Article 7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is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s accessed with th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thes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rticle 8 Special Consideration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ts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each Party shall:

(a) Create conditions to promote and encourage research which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simplified measures on access for non-commercial research purpos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address a change of intent for such research;

(b) Pay due regard to cases of present or imminent emergencies that threaten or damage human, animal or plant health, as determined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Parties ma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for expeditiou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xpeditious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se of such genetic resources, including access to affordable treatments by those in nee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c) Consider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ir special role for food security.

...

제9조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각 당사국은 이용자와 제공자가 유전자원 이용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제10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제11조 월경성 협력

1.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현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토착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유전자원과 연관된 동일 전통 지식을 복수의 당사국에 걸쳐 있는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을 참여시키고 이 의정서의 목적 이행을 위해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1.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관한 토착지역공동체들의 해당되는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

Article 9 Contribution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The Parties shall encourage users and providers to direct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oward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

Article 10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Parties shall consider the need for and modalities of a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to addres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occur in transboundary situations or for which it is not possible to grant or obtain prior informed consent. The benefits shared by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rough this mechanism shall be used to support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globally.

...

Article 11 Transboundary Cooperation

1. In instances where the same genetic resources are found in situ withi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Party, thos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the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where applicable, with a view to implementing this Protocol.
2. Where the sam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shared by one or mor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several Parties, those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as appropriate, with the involvement of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implementing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

Article 12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1. In implement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Protocol,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take into consideration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ustomary laws, community protocols and procedures, as applicable, with respect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2.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그러한 지식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열람 가능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통지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공동체 내 여성의 참여를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다음 각 호를 개발하는데 적절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공동체 규약;

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의 최소 요건; 그리고

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표준계약조항

4.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 협약의 목적에 따른 토착지역공동체 내, 또는 공동체 간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관습적 이용 및 교류를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

1.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이익 공유를 포함)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2. Parties, with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concerned, shall establish mechanisms to inform potential us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bout their obligations, including measures as made available throug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for access to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3. Parties shall endeavour to support, as appropriate, the development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cluding women within these communities, of:

(a) Community protocols in relation to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such knowledge;

(b) Minimum requirements for mutually agreed terms to secure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c)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benefit-sharing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4. Parti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shall, as far as possible, not restrict the customary use and exchang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within and amongs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
Article 13 National Focal Points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

1. Each Party shall designate a national focal point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The national focal point shall make information available as follows:

(a) For applicants seek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benefit-sharing;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취득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국가연락기관은 사무국과의 연락의 책임이 있다.

2.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 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 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부담한다.

3.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직무를 수행할 단일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 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국이 두 개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 들이 각각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는 최소한 접근 신청 유전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지정이나 연락처 또는 국가책임기관(들)의 책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5. 사무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

1.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이 문서에 의거하여 협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 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체계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b) For applicants seek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here possible, information on procedure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as appropriate,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establishing mutually agreed terms including benefit-sharing; and

(c) Information on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relevan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The national focal point shall be responsible for liaison with the Secretariat.

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or mor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be responsible for granting access or, as applicable, issuing written evidence that access requirements have been met and be responsible for advising on applicabl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entering into mutually agreed terms.

3. A Party may designate a single entity to fulfil the functions of both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4. Each Party shall, no later tha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for it, notify the Secretariat of the contact information of its national focal point and i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r authorities. Where a Party designates more than on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t shall convey to the Secretariat, with its notification thereof, relevant information on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ose authorities. Where applicable, such information shall, at a minimum, specify which competent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the genetic resources sought. Each Party shall forthwith notify the Secretariat of any changes in the designation of its national focal point or in the contact information or responsibilities of its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r authorities.

5. The Secretariat shall make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4 above available throug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rticle 14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nd Information-Sharing

1. An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is hereby established as part of the clearing-house mechanism under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It shall serve as a means for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particular, it shall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each Party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2. 각 당사국은,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는 물론,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다.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상응 문서

3.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추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책임기관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나. 표준계약조항

다.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라. 행동규범 및 모범관행

4.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의 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운영 방식은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며, 계속하여 검토된다.

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shall make availabl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ny information required by this Protocol, as well as information required pursuant to the decisions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The information shall include:

(a)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b) Information on the national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or authorities; and

(c) Permits or their equivalent issued at the time of access as evidence of the decision to grant prior informed consent and of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3. Additional information, if available and as appropriate, may include:

(a)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information as so decided;

(b) Model contractual clauses;

(c) Methods and tools developed to monitor genetic resources; and

(d) Codes of conduct and best practices.

4. The modalities of the operation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including reports on its activities, shall be considered and decided up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t its first meeting, and kept under review thereafter.

...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

1. 각 당사국은 그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타방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위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한다.

...

###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 준수

~~~~~

1.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소재한 타방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 하에 접근되었고, 그리고 상호합의 조건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위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에 대한 위반주장에 대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한다.

...

Article 15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

1.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o provide that genetic resources utilized within its jurisdiction have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the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2.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compliance with measure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3. Par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e in cases of alleged violation of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

### Article 16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1.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as appropriate, to provide tha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utilized within their jurisdiction has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or approval and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where suc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re located.
2.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compliance with measures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3. Parties shall, as far as possible and as appropriate, cooperate in cases of alleged violation of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1.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 (1)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한 경우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한다.
-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특정 지정 점검기관의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위목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미 준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관련 국가 기관들, 사전통보승인을 하는 당사국,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해야 한다.
- (4) 점검기관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호의 이행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는 유전자원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모든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유전자원의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상호합의조건에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Article 17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1. To support compliance,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as appropriate, to monitor and to enhance transparency about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Such measures shall include:

(a) The designation of one or more checkpoints, as follows:

- (i) Designated checkpoints would collect or receive, as appropriate, relevant information related to prior informed consent, to the source of the genetic resource, to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and/or to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s appropriate;
- (ii) Each Party shall, as appropriate and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a designated checkpoint, require users of genetic resources to provide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the above paragraph at a designated checkpoint. 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measures to address situations of non-compliance;
- (iii) Such information, including from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where they are available, will, without prejudice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be provided to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to the Party providing prior informed consent and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s appropriate;
- (iv) Checkpoints must be effective and should have functions relevant to implementation of this subparagraph (a) They should be relevant to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or to the collection of relevant information at, inter alia, any stage of research, development, innovation, pre-commercialization or commercialization.

(b) Encouraging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to include provisions in mutually agreed terms to shar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such terms, including through reporting requirements; and

(c) Encouraging the use of cost-effective communication tools and systems.

2. 제6조제3항마호에 따라 발급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된 허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한다.
3.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법 및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보 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해당 정보가 기밀 정보가 아닐 경우 최소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가. 발급 기관

나. 발급일

다. 제공자

라. 인증서 고유 확인

마. 사전통보승인이 부여된 자나 기관

바.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나 유전자원

사.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아. 사전통보승인이 있었다는 확인, 그리고

자.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2. A permit or its equival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paragraph 3 (e) and made available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shall constitut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3.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shall serve as evidence that the genetic resource which it covers has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have been established, as required by the domestic access and benefit-sharing legislation or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e Party providing prior informed consent.
4.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inimum information when it is not confidential:

(a) Issuing authority;

(b) Date of issuance;

(c) The provider;

(d) Unique identifier of the certificate;

(e) The person or entity to whom prior informed consent was granted;

(f) Subject-matter or genetic resources covered by the certificate;

(g) Confirmation that mutually agreed terms were established;

(h) Confirmation that prior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and

(i) Commercial and/or non-commercial use.

제18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

1. 제6조제3항사호제(1)목과 제7조를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공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을 상호합의조건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

가. 모든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나.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다.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2. 각 당사국은 상호합의조건에서 비롯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적용 가능한 관할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법률 체계 하에서 분쟁해결을 추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그리고

나. 외국 판결 및 중재 판정 상호 인정과 집행 관련 체계의 이용.

4. 이 조의 효력은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 제31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Article 18 Compli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1. I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paragraph 3 (g) (i) and Article 7, each Party shall encourage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o include provisions in mutually agreed terms to cover, wher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a) The jurisdiction to which they will subject any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b) The applicable law; and/or

(c) Options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uch as mediation or arbitration.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 opportunity to seek recourse is available under their legal systems, consistent with applicable jurisdictional requirements, in cases of disputes arising from mutually agreed terms.

3. Each Party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as appropriate, regarding:

(a) Access to justice; and

(b) The utilization of mechanisms regarding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4. The effectiveness of this article shall be review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is Protocol.

...

제19조 표준계약조항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구성,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주기적으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 계약조항의 사용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

제20조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자발적인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 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개발,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

제21조 대중인식 제고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의정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대한 홍보
- 나.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조직

...

Article 19 Model Contractual Clauses

1. Each Party shall encourage, as appropriate, the development, update and use of sectoral and cross-sectoral model contractual clauses for mutually agreed terms.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use of sectoral and cross-sectoral model contractual clauses.

...

Article 20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1. Each Party shall encourage, as appropriate, the development, update and use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in relation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2.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use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and consider the adoption of specific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

Article 21 Awareness-Raising

Each Party shall take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access and benefit-sharing issues. Such measures may include, inter alia:

- (a) Promotion of this Protocol, including its objective;
- (b) Organization of meeting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다.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c)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help desk f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라. 국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

(d) Information dissemination through a national clearing-house;

마.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홍보

(e) Promotion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and/or standards in consultation wit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바. 적절한 경우, 국가 내, 지역 내, 그리고 국제적 경험의 공유 촉진

(f) Promotion of, as appropriate,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experience;

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g) Education and training of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bout their access and benefit-sharing obligations;

아.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 의정서 이행 참여, 그리고

(h)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and

자. 토착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대한 인식 개선

(i) Awareness-raising of community protocols and procedur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제22조 역량

Article 22 Capacity

1.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세계적, 지역적, 소(小) 지역적, 국가적 기관 및 기구를 통한 수단을 포함하여 역량 강화, 역량 개발, 인적 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당사국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capacity-building, capacity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human resources and institutional capaciti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is Protocol in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cluding through existing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Parties should facilitate the involvement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2.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협약 관련 조항에 따른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을 위해 적극 고려한다.

2. The need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or financi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be taken fully into account for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to implement this Protocol.

3.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의 토대로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 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국가 역량 자체 평가를 통해 자국의 국가 역량 관련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한 당사국들은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토착 지역 공동체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체 파악한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개발은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와 같은 핵심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의정서의 이행과 그 의무 준수 역량

나. 상호합의조건의 협상 역량

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개발, 이행, 집행 역량, 그리고

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가치를 더할 내생적 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각 국가의 역량

5. 상기 1항에서 4항에 따른 조치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법적, 제도적 개발

나. 상호합의조건 협상을 위한 훈련과 같이, 협상의 공평성 및 공정성의 촉진노력

다. 의무준수 감시 및 집행

라.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위해 최고로 가용한 의사소통 수단 및 인터넷 기반 체계 이용

3. As a basis for appropriat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should identify their national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through national capacity self-assessments. In doing so, such Parties should support the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relevant stakeholders, as identified by them, emphasizing the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of women.

4. In suppo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may address, inter alia, the following key areas:

(a) Capacity to implement, and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Protocol;

(b) Capacity to negotiate mutually agreed terms;

(c) Capacity to develop, implement and enforce domestic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d) Capacity of countries to develop their endogenous research capabilities to add value to their own genetic resources.

5. Measu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to 4 above may include, inter alia: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b) Promotion of equity and fairness in negotiations, such as training to negotiate mutually agreed terms;

(c) The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compliance;

(d) Employment of best available communication tools and Internet-based system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ctivities;

다.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사용

바. 생물자원탐사 및 관련 연구, 그리고 분류학적 연구

사. 기술 이전, 그리고 그러한 기술 이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역량

아.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도 강화

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그리고

차.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특히 공동체 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6. 상기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착수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역량 강화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의 시너지 및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e) Development and use of valuation methods;

(f) Bioprospecting, associated research and taxonomic studies;

(g) Technology transfer, and infrastructure and technical capacity to make such technology transfer sustainable;

(h) Enhancement of the contribu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activities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 Special measure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relevant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ccess and benefit-sharing; and

(j) Special measure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with emphasis on enhancing the capacity of women within those communities in relation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6. Information on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initiatives a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to 5 above, should be provided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with a view to promoting synergy and coordination on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제23조 기술 이전, 공조, 협력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기 위해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기술 접근 및 이들 당사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공조 활동들은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인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혹은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내에서 이들 국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Article 23 Technology Transfer,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5, 16, 18 and 19 of the Convention,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and cooperate in technical and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including biotechnological research activities, as a mean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Protocol. The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access to technology by, and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order to enable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a sound and viable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base for the attain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Where possible and appropriate such collaborative activities shall take place in and with a Party or the Part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r are the countries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Party or Parties that have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제24조 비당사국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들이 이 의정서를 준수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25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협약 제20조의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2. 협약의 재정적 체계는 이 의정서의 재정적 체계이다.
3. 이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역량 강화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재정적 체계에 관한 지침의 심의를 위해 당사국 총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4. 상기 제1항의 맥락에서,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역량 강화 및 개발 요건을 파악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 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필요 사항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5. 이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총회의 관련 결정에 포함된 협약의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은 이 조의 조항들에 준용된다.
6. 또한 선진국인 당사국들은 양자간 경로, 지역적 경로 및 다자 간 경로를 통해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들과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Article 24 Non-Partie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non-Parties to adhere to this Protocol and to contribute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Article 25 Financial Mechanism and Resources

1. In consider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the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2.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shall be the financial mechanism for this Protocol.
3. Regarding the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referred to in Article 22 of this Protoco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in providing guidance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2 above, for consideratio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of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for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capacity needs and prioriti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ncluding women within these communities.
4. In the context of paragraph 1 above, the Parties shall also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and of the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in their efforts to identify and implement their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requirements for the purpo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5. The guidance to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in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cluding those agreed before the adoption of this Protocol,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6.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may also provide, and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and the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avail themselves of,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through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channels.

제26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

1.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총회 역할을 하는 당사국 총회의 모든 회의 절차에서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할 때,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만 내릴 수 있다.
3.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할 때, 해당 시점에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는 당사국총회 사무국의 일원은 이 의정서 당사국들에 의해 이 의정서 당사국들이 선출하는 일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 하며 당사국총회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에 의해 할당된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관한 권고를 한다.
 - 나.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하 기구를 설치한다.
 - 다. 적절한 경우, 유관 국제기구 및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의 서비스 및 협력과 이들 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구하고 이용한다.
 - 라. 이 의정서 제29조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 및 시간적 간격을 정하고 그러한 정보는 물론 모든 산하 기구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고려한다.

Article 26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1.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serve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Protocol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decisions under this Protocol shall be taken only by those that are Parties to it.
3. Whe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es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y member of the Bureau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Protocol, shall be substituted by a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4.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keep under regula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and shall make, within its mandate, the decisions necessary to promot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t shall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by this Protocol and shall:
 - (a) Make recommendations on any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 (b) Establish such subsidiary bodies as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 (c) Seek and utilize, where appropriate, the services and cooperation of, and information provided by,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bodies;
 - (d) Establish the form and the intervals for transmitting the information to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is Protocol and consider such information as well as reports submitted by any subsidiary body;

다. 요청받는 대로,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의정서 및 의정서의 부칙은 물론 이 의정서에 대한 모든 추가 부칙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채택한다. 그리고

바. 이 의정서의 이행에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5.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합의로 달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총회 의사규칙과 협약의 재정 관련 규칙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6.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첫 회의는 사무국이 소집하며,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 예정된 첫 당사국총회와 동시에 개최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후속하는 정례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총회 정례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다.
7.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특별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되거나, 당사국의 서면 요청으로 개최하되, 사무국이 그러한 요청을 당사국들에 전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적어도 당사국 3분의 1이 찬성할 시에 한한다.
8.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국제연합 특별 기구, 국제원자력기구는 물론 그러한 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참관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참관국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들에 있어 자격이 있고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참관국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무국에 표시한 모든 국가, 국제, 정부, 비정부 기구 또는 기관은 참석한 당사국 3분의 1이 반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관국의 참석과 참여는 상기 제5항에 언급된 의사규칙에 따라야 한다.

(e) Consider and adopt, as required, amendments to this Protocol and its Annex, as well as any additional annexes to this Protocol, that are deemed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and

(f) Exercise such other functions as may be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tocol.

5.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financial rul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is Protocol, except as may be otherwise decided by consensus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6.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iat and held concurrently with the 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at is scheduled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Subsequent 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be held concurrently with 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7. Extraordinary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be held at such other time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or at the written request of any Party, provided that, within six months of the request being communicated to the Parties by the Secretariat, it is supported by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8.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s well as any State member thereof or observers thereto not party to the Convention, may be represented as observers at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y body or agency, whe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that is qualified in matters covered by this Protocol and that has informed the Secretariat of its wish to be represented at a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a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s an observer, may be so admitted, unless at least one third of the Parties present objec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the admission and participation of observers shall be subject to the rules of procedure, as referred to in paragraph 5 above.

...

제27조 보조기구

...

1. 협약에 의하거나 그에 따라 설립된 모든 보조기구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보조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회의에서 해당 보조기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보조기구의 모든 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3.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의 당사국을 대표하는 그 보조기구의 임원국 중에 의정서의 비당사국은 의정서의 당사국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임원국으로 대체된다.

...

제28조 사무국

...

1. 협약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대한 협약 제24조제1항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3. 이 의정서를 위한 사무국 서비스의 비용은 그것이 명확히 구별되는 범위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충당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결정한다.

...

제29조 감시와 보고

...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점검해야 하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시간적 간격과 형식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해당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Article 27 Subsidiary Bodies

...

1. Any subsidiary body established by or under the Convention may serve this Protocol, including upon a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y such decision shall specify the tasks to be undertaken.
2. Parties to the Convention that are not Parties to this Protocol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proceedings of any meeting of any such subsidiary bodies. When a subsidiary body of the Convention serves as a subsidiary body to this Protocol, decisions under this Protocol shall be taken only by Parties to this Protocol.
3. When a subsidiary body of the Convention exercises its functions with regard to matters concerning this Protocol, any member of the bureau of that subsidiary body representing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at that time, not a Party to this Protocol, shall be substituted by a member to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

Article 28 Secretariat

...

1. The Secretariat established by Article 24 of the Convention shall serve as the secretariat to this Protocol.
2.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Protocol.
3.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istinct, the costs of the secretariat services for this Protocol shall be met by the Parties here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at its first meeting, decide on the necessary budgetary arrangements to this end.

...

Article 29 Monitoring and Reporting

...

Each Party sha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Protocol, and shall, at intervals and in the format to be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on measures that it has taken to implement this Protocol.

...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정서 조항들의 준수를 촉진하고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절차 및 제도적 체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들은 적절한 경우 조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들은 협약 제27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및 체제와 별도로,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평가 및 검토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발효부터 4년 후, 그리고 그 후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정하는 시간 간격에 따라 이 의정서의 효력에 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제32조 조인

이 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당사국의 서명을 받는다.

...

제33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상기 제1항에 따라 의정서가 발효된 날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그 국가나 지역 경제 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나 그 국가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

Article 30 Procedures and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is Protoco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at its first meeting, consider and approve cooperative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nd to address cases of non-compliance. These procedures and mechanisms shall include provisions to offer advice or assistance, where appropriate. They shall be separate from,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mechanisms under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

Article 31 Assessment and Review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undertake,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nd thereafter at intervals determin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tocol.

...

Article 32 Signature

This Protocol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Parties to the Convention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from 2 February 2011 to 1 February 2012.

...

Article 33 Entry into Force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fif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by States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2.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for a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ratifies, accepts or approves this Protocol or accedes thereto after the deposit of the fiftieth instru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n which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on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at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ever shall be the later.

3.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34조 유보

...

의정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

제35조 탈퇴

...

1. 이 의정서가 한 당사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언제든지 해당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모든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혹은 해당 탈퇴 통지에 명시될 수 있는 날 중 늦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36조 정본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 명시된 날짜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작성되었다.

3.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above,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member States of such organization.

...

Article 34 Reservations

...

No reservations may be made to this Protocol.

...

Article 35 Withdrawal

...

1. At any time after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is Protocol has entered into force for a Party, that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Protocol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ory.
2. Any such withdrawal shall take place upon expiry of one year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epository, or on such later date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fication of the withdrawal.

...

Article 36 Authentic Texts

...

The original of this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o that effect, have signed this Protocol on the dates indicated.

DONE at Nagoya on this twenty-ninth day of October, two thousand and ten.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1. 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가. 수집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한 표본에 대한 접근료/접근료들
 - 나. 선급금
 - 다.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 라. 로열티 지급액
 - 마. 상용화의 경우 면허료
 - 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특별 부담액
 - 사. 상호 합의된 경우 봉급 및 우대 조건
 - 아. 연구 지원금
 - 자. 합작투자
 - 차. 지적재산권 공동 보유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1. Monetary benefi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 (a) Access fees/fee per sample collected or otherwise acquired;
 - (b) Up-front payments;
 - (c) Milestone payments;
 - (d) Payment of royalties;
 - (e) Licence fees in case of commercialization;
 - (f) Special fees to be paid to trust funds supporting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 (g) Salaries and preferential terms where mutually agreed;
 - (h) Research funding;
 - (i) Joint ventures;
 - (j) Joint ownership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가.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내,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다. 제품 개발 참여

라.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마. 유전자원 현장 외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바. 합의된 양보 및 우대 조건에 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에게 이전하는 지식 및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명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

사.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아. 제도적 역량 강화

자.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차.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할 경우 그러한 국가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관련 훈련

2. Non-monetary benefits may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 Sha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b)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in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s, particularly biotechnological research activities, where possible in the Part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c) Participation in product development;

(d)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e) Admittance to ex situ facilities of genetic resources and to databases;

(f) Transfer to the provider of the genetic resources of knowledge and technology under fair and most favourable terms, including on concessional and preferential terms where agreed, in particular,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make use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iotechnology, or that are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g)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technology transfer;

(h) Institutional capacity-building;

(i)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access regulations;

(j) Training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with the full participation of countries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nd where possible, in such countries;

카. 생물학적 자료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파.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내 유전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최우선 요구를 다루는 연구

하.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 및 후속 협력 활동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거. 식량 안보 및 생계 유지의 이익

너. 사회적 인식

더.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보유

(k) Access to scientific information relevant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biological inventories and taxonomic studies;

(l)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m) Research directed towards priority needs, such as health and food security, taking into account domestic uses of genetic resources in the Part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n)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at can arise from an access and benefit-sharing agreement and subsequent collaborative activities;

(o)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p) Social recognition;

(q) Joint ownership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발행일	2014년 1월
발행처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www.abs.go.kr)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난지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기획·편집	이병희, 이상준, 임문수, 서민환
디자인	베이스라인 김현수 (www.baseline.co.kr)
일러스트	조규상
제작	수프린팅
